할부금융 신청서 / 약정서

Mercedes-Benz Financial Services

Mercedes-Benz Financial

www.mercedes-benz-financial.co.kr

할부금융 신청서

2016. 5. 1 개정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주) 귀중

※ 할부 이용자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를 받습니다.

년 월 일

□ 개인 / □ 개인사업자

공 통 필 수 기 재 사 항

※ 아래 필수 기재사항 작성만으로도 금융상품 이용 계약이 가능합니다

성 명	(인)	생년월일	년 월 일	전화번호	
자택주소 (실거주지)	(-)				
자택주소 (주민등록지)	(-)				

※ 대출용도가 사업자용인 경우 추가적으로 사업자정보를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자등록연월일	년 월 일	업태/종목	
이메일 주소	@	☐ 할부거래 청구서와 이자율, 연체이자율 및 각종 요율, 할부금의 변제방법 등 할부계약의 주요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이메일로 전달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결제계좌	은행	계좌번호	(※본인명의 계좌에 한함)		
청구서 수령	☐ 우편(☐ 직장 ☐ 자택) ☐ 이메일 ☐ 기타( )	결제일	매월 ☐ 5일 ☐ 10일 ☐ 15일 ☐ 20일 ☐ 25일 ☐ ( )		

이 약정서 뒷면에있는 자동계좌이체 약관을 승인하고 위와같이 자동계좌이체를 신청합니다. 예금주 : (인)

※ 아래의 정보 수집은 금융소비자에 대한 적합한 구매권유(만 65세 이상인 자, 은퇴자, 주부 등에게 기한이익상실 등 상품설명 강화)를 하기 위함입니다. 귀하가 아래의 정보 제공에 동의하시면 상품에 대한 불이익사항을 다른 정보보다 우선하여 설명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대출 절차가 진행됨을 안내드립니다.

☐ 추가설명 원함(☐ 65세 이상 고령층 ☐ 은퇴자 ☐ 주부 ☐ 기타) ☐ 추가설명 원치 않음

상품별 필수 기재사항(개인 및 개인사업자만 작성)

※ 대출가능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기초로 수집하는 정보입니다.

직장(상호)명		부서명		직위		재직(사업)기간		연소득		직종	
직장주소	(-)							직장전화번호			

□ 법인

공 통 필 수 기 재 사 항

※ 아래 필수 기재사항 작성만으로도 금융상품 이용 계약이 가능합니다

상 호	(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사업장 주소	(-)			전화번호	
사업자등록 연월일	년 월 일	업 종		결제방식	☐ 자동이체 ☐ 현금수납
이메일 주소	@ ※법인의 경우 계약(업무)담당자 이메일	☐ 할부거래 청구서와 이자율, 연체이자율 및 각종 요율, 할부금의 변제방법 등 할부계약의 주요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이메일로 전달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결제계좌	은행	계좌번호	(※본인명의 계좌에 한함)		
청구서 수령	☐ 우편(☐ 직장 ☐ 자택) ☐ 이메일 ☐ 기타( )	결제일	매월 ☐ 5일 ☐ 10일 ☐ 15일 ☐ 20일 ☐ 25일 ☐ ( )		

이 약정서 뒷면에있는 자동계좌이체 약관을 승인하고 위와같이 자동계좌이체를 신청합니다. 예금주 : (인)

법 인 업 무 담당자 기 재 사 항

※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인확인을 위해 수집하는 정보입니다.

법인계약(업무) 담당자성명		부서명		전화번호	

선 택 기 재 사 항

※ 아래 선택 기재사항은 할부금융상품 이용계약 체결에 필수적 기재사항이 아니므로 필요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정확한 한도 및 금리산정 등을 위해 수집하는 정보입니다. (신용평점 가점요인으로 작용하며 한도가 향상될 수 있습니다.)

고용형태	☐ 정규 ☐ 계약 ☐ 파견 ☐ 기타	주택소유현황	☐자택(본인명의/배우자명의/가족명의) ☐전세 ☐월세 ☐기타( )	거주기간	년 개월
주택유형	☐ 아파트 ☐ 단독주택 ☐ 고급빌라 ☐ 연립/다세대/빌라 ☐ 오피스텔/원룸	세대주구분	☐ 본인 ☐ 가족 ☐ 단독		
주요소득원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임대소득 ☐ 이자소득 ☐ 연금소득 ☐ 기타				

2) 본인 결제계좌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수집하는 정보입니다.

은 행 명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명		신청인(본인) 과의 관계	
예금주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예금주 전화번호			

금융회사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주) 서울특별시 중구 한강대로 416, 10층 (남대문로5가, 서울스퀘어빌딩) 대표이사 힐케 안센	특약사항	(※공동채무계약의 경우, 분할비율 명기)

채무자겸 본인의 본인확인 및 자필서명을 확인함 | 판매직원 서명 | Finance Consultant 서명

Mercedes-Benz Financial

www.mercedes-benz-financial.co.kr

대한민국정부 인지세 0,000원 남대문세무서장 후납승인2014년15호

할부금융 약정서

2018. 4. 30 개정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주) 귀중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은 이 할부금융 약정과 체결에 관련하여 여신거래기본약관 및 주요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아래와 같이 자동차 할부금융 계약을 체결합니다.

년 월 일

차량내역	차종/모델		판매가격	원	선수금	원	추가항목	원

매도인	판매사		판매직원	휴대폰 :	Finance Consultant	휴대폰 :

대출 및 상환조건						
할부원금(①)	원	이자율(년)	%	상환방식	원리금균등분할상환	
할부이자(②)	원	유예금	원	할부기간	개월	
잔가보장약정	□ 잔가보장약정포함 (잔가보장약정이 포함되었을 경우, "잔가보장에 관한 약정서"상의 약관이 적용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만기 1년 이상 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중도상환원금x1%(부대비용)+중도상환원금x(중도상환수수료율 -1%)x잔존기간*/(대출기간-30일) 으로 합니다. *30일 미만 상환시'대출 사용 시간을' 30일로 간주합니다					
	만기 1년 미만 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중도상환원금x(중도상환수수료율)%x잔존기간*/(대출기간-30일) 으로 합니다. *30일 미만 상환시'대출 사용 시간을' 30일로 간주합니다					
할부가격(①+②)	원	할부수수료의 실제 연간요율	%	지연배상금율 ("약정이자율 + 3%, 법정 최고금리 (24%) 이내")	연 %	
월 납입액 (a+b)	원	월 할부금(a)	원	월 부가서비스료(b)	원	
보증조건	보증채무최고액	할부 원금의 130%	보증기간	할부 기간과 동일	할부원금유예상환의 기간연장약정	
담보내역	□ 자동차근저당 □ 부동산근저당 □ 예금 □ 유가증권 □ 기타 ( )				채무자 겸 본인의 신청시 최종납부일의 유예할부원금에 대한 추가할부 이용가능 (세부내역 계약종료시 확정)	

서비스상품			
상품명1		금액1	
상품명2		금액2	
상품명3		금액3	
• 본 서비스 상품의 정비용역의 제공 책임은 쿠폰을 판매한 딜러가 제공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쿠폰북의 내용 중 "쿠폰사용방법" 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금융상품의 월납입액에는 본인의 결정에 따라 구매한 서비스상품의 월부가서비스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중도상환, 중도해지 등의 사유로 본 계약이 만기 전 종료될 경우, 본인은 계약 기간의 종료일 현재 미납된 서비스 상품의 전체잔액을 납부하여 서비스상품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총금액	
		채무자 겸 본인	(인)

※ 아래 기재사항은 보증인의 담보능력 파악, 계약내용 전달 등을 위해 취득하는 정보입니다.

연대보증인의 입보가 가능한 경우

연대보증인	
차주가 개인사업자일 때	□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상 공동대표
차주가 법인일 때(1인)	□ 최대주주 □ 특수관계인 포함 과점/대주주(30%이상) □ 대표이사 (고용임원제외) □ 무한책임사원
자동차 구입 일 때	□ 장애인의 차량구입 시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 □ 영업목적 차량 구입
기타	□ 상기 외 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 제2항 제4호, 제5호에 해당
보증종류	특정근보증: 당해채무 (기간연장 증액포함), 한정근보증: 특정+동일종류신규대출 □ 특정근보증 □ 한정근보증 (단, 장애인 영업목적을 위한 자동차 구입시 100%)

연대보증인

성명	(인)	생년월일	년 월 일	신청인과의 관계	
자택주소	(-)			전화번호	
직장(사업자)명	부서명	직위	재직(사업)기간	연소득/재산세	만원/ 만원
직장주소	(-)			직장전화번호	
보증채무최고액	원 (※ 보증채무최고액은 총 대출금액의 130%입니다.)			보증기간	개월
특이사항					

금융회사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주) 서울특별시 중구 한강대로 416, 10층 (남대문로5가, 서울스퀘어빌딩) 대표이사 힐케 안센	특약사항	(※ 공동채무계약의 경우, 분할비율 명기)

채무자겸 본인의 본인확인 및 자필서명을 확인함	판매직원	서명	Finance Consultant	서명

차량인수증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주) 귀중

채무자겸 본인은 귀사와 체결한 할부금융 약정에 의거 약정서상의 차량을 정히 인수합니다. 본인이 직접 인수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대리인에게 인수 제반 절차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겠습니다.

인수일 :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인수인 : _____ (인)

할부금융 약관

여신금융협회 사후보고 접수일자 : 2019.00.00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여신거래기본약관의 부속약관으로 메르세데스벤츠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주) (이하 "금융회사"라 합니다)와 자동차를 매수하면서 할부금융을 이용하는 자(이하 "채무자"라 합니다)간의 할부금융 계약에 있어서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할부금융"이라 함은 금융회사가 매매계약에 대하여 매도인 및 채무자와 각각 약정을 체결하여 채무자에게 대출한 재화 및 용역의 구매자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채무자로부터 그 원리금을 나누어 상환받는 방식의 금융을 의미합니다.
2. "할부금융자금"이라 함은 금융회사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매도인에게 지급한 할부금융에 의한 대출금액을 의미합니다.
3. "할부금"이라 함은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상환하여야 할 할부금융에 의한 대출금액 및 이자액의 총 합계액을 의미합니다.

제3조 (약정서 필수기재사항)

할부금융 약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기재합니다.

1. 매도인, 채무자 및 금융회사의 성명 및 주소
2. 대상물건의 세부내용 및 인도등의 시기
3. 이자율, 연체이자율, 중도상환수수료 등 채무자가 부담하는 각종 요율
4. 물건가격, 할부금융자금
5. 월 할부금의 금액, 지급횟수 및 시기
6. 채무자가 부담하는 이자율 등의 실제연간요율

제4조 (거래조건의 주지 의무)

금융회사는 채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서면을 교부하기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동의가 있으면 팩스나 전자문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보낼 수 있습니다.

1. 금융회사가 정하는 이자율, 연체이자율 및 각종 요율. 이 경우 각종 요율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지급하는 금액이 포함되도록 산정
2. 할부금의 변제방법

제5조 (할부금융의 신청 및 지급위탁계약)

채무자가 자동차구입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도인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에 할부금융을 신청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채무자를 대신하여 할부금융자금을 매도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니다.

제6조 (소유권행사의 제한)

채무자는 이 약정서 상 기재된 할부금의 완제시까지 금융회사의 승낙없이 당해 자동차를 양도, 대여 등의 임의처분을 하거나 질권 또는 저당권설정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제7조 (초회납입 및 지연배상금)

① 채무자는 금융회사가 운영하는 결제일 중에 채무자가 선택하는 대출기일 이내에 도래하는 상환일을 초회납입일로 하며, 초회차 상환금액은 매월 납부해야 할 할부원금에 당해 대출일로부터 초회차 납입일까지의 기간이자를 가산하여 납입합니다.

② 채무자가 월 할부금 등 금융회사에 지불하기로 한 금액을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기로 한 금액에 대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가 정하는 한도내에서 금융회사와 채무자간의 약정에 따라 정한 지연배상금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③ 할부금융 대출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때부터 할부금융자금 잔액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지연배상금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산출하여 지급하기로 합니다.

제8조 (기한이익의 상실)

① 채무자에 대하여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각 사유별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 또는 당해 채무를 즉시 상환하기로 합니다.

② 채무자가 제1항 이외에 제6조의 자동차의 양도, 대여 등 임의처분 행위를 한 경우 채무자는 당해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즉시 상실하여 이를 곧 갚아야 할 의무를 지며, 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 등의 행위를 한 경우 금융회사는 서면으로 설정의 해제를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0일 이상이 경과하면 채무자는 당해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이를 곧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제9조 (할부금의 기한도래 전 상환)

① 채무자는 할부금융 대출기간 중도에 잔여 할부금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도상환일 현재까지 아직 상환하지 않은 금액(당월 할부금, 연체금 등)을 모두 상환해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 채무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가 정하는 한도내에서 금융회사와 채무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를 별도로 납부하기로 합니다. 다만 제8조에서 정한 기한이익상실 사유에 해당되어 금융회사가 기한전에 할부금융자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합니다.

③ 제2항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대출 사용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증가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10조 (항변권)

① 채무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회사에게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매도인과의 자동차 할부매매 계약이 무효 ·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2. 매도인이 자동차를 약정한 인도 시기까지 채무자에게 인도하지 않는 경우
3.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자동차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채무자가 제1항의 지급거절을 항변함에 있어서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그러한 취지를 통지하기로 하며, 금융회사에 지급거절을 할 수 있는 금액은 지급기일이 지나지 않은 나머지 할부금에 한합니다.

③ 채무자는 제2항의 통지이전에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하기로 하며, 금융회사가 항변사유에 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채무자는 이에 적극 협력하기로 합니다.

④ 채무자가 상행위를 목적으로 자동차 할부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제11조 (비용의 부담)

① 채무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가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금융회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1. 채무자의 요구에따라 발생하는 제증명 · 확인서 등의 소요비용
2. 법령상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인정된 비용

② 인지세는 채무자와 금융회사가 각 50%씩 부담하기로 합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채무자가 부담하기로 한 인지세를 금융회사가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에 준하여 갚기로 합니다.

제12조 (담보의 제공)

금융회사는 약정서상 채무자의 금융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별도의 담보를 제공할 것을 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무자는 금융회사가 제시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기로 합니다.

제13조 (유효기간)

이 약정의 효력은 당해 대출이 일어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채무자가 이 약정에 기명날인한 날에 발생하며, 금융회사에 대한 이 약정에 따른 모든 의무가 전부이행 될 때까지 유효합니다.

제14조 (채권의 양도)

금융회사는 이 약정서상의 채권을 민법,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해석에 관하여는 금융회사의 여신거래기본약관을 따르기로 합니다.

별첨 1 자동이체약관

1. 신청인 및 예금주(이하 "고객"이라 합니다.)는 약정된 납부일을 기준으로 메르세데스벤츠 파이낸셜 서비스 주식회사 (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지정하는 계좌이체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회사가 청구하는 금액을 자동이체 계좌로 신청한 은행 및 잔고보유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합니다.) 계좌(이하 "지정계좌"라 합니다.)에서 출금하여 납부할 것을 확인합니다.
2. 자동납부를 위하여 지정계좌의 예금을 출금하는 경우에는 예금약관이나 약정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금청구서나 수표 없이 자동계좌이체 처리절차에 의하여 출금처리 되며, 금융기관의 출금마감시간 내에 입금된 금액에 한하여 출금처리 됩니다.
3. 지정계좌의 예금잔액(자동대출 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이 이체일 현재 회사의 청구금액보다 부족하거나 예금의 지급제한, 약정대출의 연체 등으로 대체납부가 불가능한 경우의 손해에 대해서는 고객의 책임으로 합니다.
4. 이체일에 동일한 수종의 자동계좌이체 청구가 있는 경우, 고객과 해당 계좌개설금융기관이 약정한 출금우선순위에 따르겠습니다
5. 자동이체 일자는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나 이런 경우 사전에 고객에게 통지하며, 자동이체일 변경으로 인해 고객이 불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6. 납부자의 사정으로 예금계좌를 변경하거나 자동납부신청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 소정의 양식에 의한 자동납부(해지)신청서와 통장사본을 제출할 것이며 이의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손해는 고객의 책임으로 합니다.
7. 자동납부 신청에 의한 지정계좌에서의 출금은 회사의 청구대로 출금하되 청구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고객과 회사가 협의하여 조정하기로 합니다.
8.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금융기관의 자동이체납부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확 인 서

하기 본인은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이하 "회사")가 여신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권유할 때 회사로부터 계약의 이자율, 계약 해제, 해지에 관한 사항, 각 수수료, 수수료율 및 부대비용, 여신거래기본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대출계약 철회권 내용 및 철회권 행사에 따른 반환 등 절차(철회권 행사시 프로모션을 통해 회사가 차량 매매대금 또는 선수금의 일부로 지급한 금전, 재화, 기타 일체의 혜택 등의 반환이 필요한 점), 기한 이익 상실 사유, 변동 금리 또는 고정 금리 유의사항, 중도상환수수료, 연체이자율 및 연체이자 부과 사유, 높은 담보인정비율 및 대출 관련 담보가격 하락에 따른 추가 담보납입 요구 가능성 등 기타 불이익에 관한 중요사항과 자동차 금융상품을 통해 사용하게 되는 차량에는 위치정보 수집장치가 부착되어 있다는 것과 재산 증가나 신용평가등급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 받았으며, 위 사항들을 모두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2(고객확인의무)에 따라 고객 정보, 문서자료 등을 수집하며 제공하신 정보는 동법에 정한 바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고객님께서 신원 확인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제공한 정보에 대한 검증이 불가능한 경우, 고객님에 대한 금융거래가 거절 또는 제한됩니다.

년 월 일

계약자 성명 : (서명/날인)

할부거래법상 청약철회권 및 항변권 적용배제 안내

당사의 할부금융 상품은 고객에 대한 자동차 할부금융 상품으로 할부거래법상 철회항변권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철회권이란?**

할부 구입일 또는 목적물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철회(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할부거래법 제8조)

◇ **항변권이란?**

할부계약기간 중 물품 · 서비스 등이 계약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해 잔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할부거래법 제16조)

[청약철회권 및 항변권 행사가 제한되는 할부금융거래]

○ 청약철회권 및 항변권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

☐ 거래금액이 10만원 미만이거나 할부기간이 3개월 미만인 거래

☐ 사업자가 상행위를 위하여 공급을 받는 거래

○ 청약철회권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

☐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당해 상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 사용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경우(자동차)

☐ 시간이 지남으로써 다시 판매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금융업무수탁자 작성란]

_____은(는) 위 내용에 대하여 고객(계약자)_____에게 설명하였습니다.

[고객 작성란]

_____(으)로부터 (철회항변권 적용여부)에 관해 (설명을 듣고 이해) 하였습니다.

귀하가 금융업무수탁자 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듣고 내용을 이해하신 경우 자필로 점선표 안에 엷게 인쇄된 부분을 직접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일자 : . . .

성명 : _____(서명/날인)

잔존가보장서비스에 관한 추가약정서

금융감독원 심사 승인일 : 2015. 3. 27

할부금융 계약자(이하 "갑"이라고 함)는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함) 와 할부금융약정(이하 "원계약"이라고 함)을 체결하면서 잔존가치보장서비스를 추가로 선택하였고,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추가약정서(이하 "추가약정(서)"이라고 함)를 체결하기로 합니다.

제1조 서비스내용

1. 잔존가치보장서비스(이하 "서비스")란 "갑"이 "원계약"의 약정기간 만료 전 정해진 시한까지 "원계약"의 대상이 되는 차량(이하 "대상차량"이라고 함)을 "을"이 지정하는 자(이하 "병"이라 함)에게 인도하고, 대상차량이 본 "추가약정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갑"의 선택에 의하여 본 "추가약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을"로부터 대상 차량의 만기시 잔존가치 금액(본 조 제2항에서 정한 예상잔존가치금액에서 본 추가약정서 제5조에서 정한 "감가금액의 합" 및 "초과운행부담금"을 차감한 값을 의미함, 이하 "만기 시 잔존가치금액"이라고 함)을 보장받고, 이를 "원계약"에서 약정한 유예금(이하 "유예금"이라고 함) 상환에 충당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2. 본 "추가약정" 에 따른 체결 당시 예상되는 예상잔존가치금액 및 연간약정운행거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상잔존가치금액	원
연간약정운행거리	Km/년

제2조 서비스 진행절차

1.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2. 고객의 대상차량 매각의사 표시 → 대상차량 인도 → 대상차량 평가 → 평가결과에 대한 고객 확인 → 감가금액 및 초과운행부담금 납입(사유 발생시) → 장애사유의 보완완료 → 경매 → 소유권이전 → 유예금 정산

제3조 매각의사의 표시

1.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갑"은 "원계약"의 "만기일" 1개월 전까지 "을"에게 대상차량에 대한 매각의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2. "갑"의 매각의사 표시가 있은 경우 "을"은 지체 없이 "갑"에게 대상차량에 대한 경매 등 매각 절차를 진행할 "병"의 상호, 주소, 연락처 및 담당자명을 이메일 또는 LMS로 안내합니다.

제4조 대상차량의 인도

1. "갑"은 "원계약"의 만기일 18시까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병"이 지정하는 장소에 대상차량을 인도하여야 합니다.
2. "갑"은 대상차량 매각 후 소유권이전등록이 완료되기 전까지 대상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을 유지하여야 하며, 소유권이전등록이 완료되기까지 대상차량에 대하여 발생한 비용(자동차세, 설정/압류 해지비용, 범칙금 등)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3. "갑"은 대상차량 매각과정에서 본인에게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5조 매각대상차량 평가 및 고객확인

1. 감가금액의 산정
   1) "을"은 "갑"이 제4조 제1항에 따라 "병"에게 인도한 대상차량에 대한 평가를 실시합니다.
   2) "을"은 자동차의 상태 및 성능을 평가한 후 "갑"에게 자동차평가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3) 평가 결과 대상차량에 감가사유가 있을 경우, "을"은 "갑"에게 "감가금액의 합"을 안내하고 "갑"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① "감가금액의 합"이란 "을"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차량평가 및 감가 산정 기준"에 따른 개별 감가평가액의 합계 금액을 의미합니다.
      ② 반납 시 교체 또는 수리비는 "갑"의 부담으로 하고 원상 회복 및 감가합니다.
      ③ 반납이전 이용자가 자비로 교체, 수리 시 감가율만 반영하며, 차량의 가치 감가금액은 반환시점의 자동차의 기대가치(혹은 중고가치) *감가율로 합니다. 반환시점의 자동차의 기대가치(혹은 중고가치)는 "반환차량의 출고 당시 최초 차량 가격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른 행정안전부 발표 경과 연수 별 잔존가치율" 을 말합니다.
      ④ "을"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차량 감가 기준 항목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2호 서식에 의한 자동차성능, 상태검사 결과 기준으로 사고에 의한 차체 절단 및 굴곡, 교환, 차량 부위 탈 부착의 수리 등을 포함합니다.
   4) "갑"이 대상차량의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을"과 "갑"의 상호 협의하에 정한 별도의 평가기관에 의한 평가결과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을"은 사전에 자동차의 감가율에 대하여 홈페이지 등에 예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근거 및 설명자료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5) "갑"이 대상차량의 평가결과에 이의가 없는 경우에 "갑"은 지정된 기일까지 "감가금액의 합"을 "을"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2. 초과운행부담금
   1) "갑"이 본 추가약정서 제1조 제2항에서 정한 연간약정운행거리를 초과하여 대상 차량을 운행한 경우, "갑"은 본 항 제2호에 규정된 산식에 의한 초과운행부담금을 지정된 기일까지 "을"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초과운행거리는 차량 인도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 〈초과운행부담금 산정방법〉

초과운행거리합	10,000Km 이하	10,001Km ~ 20,000Km	20,001Km ~ 40,000Km	40,000Km 초과
초과운행부담금 (Km 당)	100원	200원	500원	1,000 원

예) 할부기간3년 및 연간 20,000Km 운행거리 약정 후 만기 차량 인도 시 75,000Km운행한 경우, 15,000km(=75,000Km – 20,000Km×3)가 초과 운행거리가 되고, 초과운행부담금은 2,000,000원 (= 10,000Km × 100원 + 5,000Km × 200원)이 됨.

제6조 매각의사의 철회

1. "갑"이 매각대상차량평가 결과에 동의하지 않거나 추후 "병"이 진행하는 대상차량에 대한 경매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갑"은 대상차량의 매각의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경매는 유찰되며 "서비스"는 더 이상 제공되지 않고, "갑"은 본조에 따라 "원계약" 에서 정하고 있는 "유예금" 및/또는 이자를 "을"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2. "갑"이 매각대상차량평가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갑"은 제5조의 매각대상차량평가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대상차량의 매각의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갑"은 매각의사를 철회한 날로부터 1일 이내에 대상차량을 제4조 1항에 따라 "병"에게 인도한 장소에서 직접 인수하여야 합니다.
3. "갑"이 추후 "병"이 진행하는 대상차량에 대한 경매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갑"은 제7조의 경매가액 결과를 통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대상차량의 매각의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갑"은 매각의사를 철회한 날로부터 1일 이내에 대상차량을 제4조 1항에 따라 "병"에게 인도한 장소에서 직접 인수하여야 합니다.
4. "갑"이 지정된 기일(매각대상차량에 대한 평가결과 또는 경매결과를 통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을"에게 매각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갑"이 매각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5. "갑"이 매각의사를 철회하는 경우, "갑"은 대상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아래 금원을 "을"이 지정하는 계좌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원계약"상 만기일 이전에 매각의사를 철회하고 대상차량을 인수하면서 유예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따로 이자가 부과되지는 않으며 "원계약"에서 정한 만기일까지 "원계약상"의 유예금(이하 "유예금")만 납입하면 됩니다.
   1) 유예금
   2) 이자금액
   이자금액 = (유예금 X 이자율(*) X ("만기일" 로부터 유예금 납입일까지의 경과일수) / 365)
   *** 만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상차량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원계약의 약정이자율을 적용하며 그 이후에는 원계약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합니다.**
6. "갑"은 대상차량이 제5조에 규정한 매각대상차량평가를 위해 제3의 장소로 이동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제4조에 따른 차량인도시점의 운행거리와 본 조에 따른 매각의사 철회시 인수시점의 운행거리가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7. "갑"이 대상차량의 매각의사를 철회하는 경우, "갑"은 철회시점까지 발생한 매각 비용(주차비, 자동차검사비, 탁송료, 경매관련 수수료, 경매관련 낙찰 수수료 등) 일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7조 대상차량의 매각 및 정산

1. 매각대상차량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낙찰 가격이 확정 되면 "병"은 갑에게 최종 낙찰 가격을 즉시 안내하여야 합니다.
2. "갑"은 대상차량의 경매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경매가액 결과를 통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매각의사를 제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철회할 수 있습니다.
3. "갑"이 대상차량의 경매결과에 이의가 없는 경우에 "갑"은 경매가액 결과를 통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병"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갑"이 지정된 기일(경매결과를 통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병"에게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갑"이 매각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5. 대상차량이 경매되어 최종 매수자(낙찰자)에게 소유권이전 등록이 완료되면, "갑"과 "을"은 "매각대금 등의 합" *에서 "원계약"상의 유예금을 아래와 같이 정산합니다.
   * "매각대금 등의 합"이라 함은 대상차량의 매각대금(부가가치세 포함)과 제5조에 의한 "감가금액의 합" 및 "초과운행부담금"을 더한 금액을 말합니다.
   1) "매각대금 등의 합"이 약정잔존가치금액 보다 적은 경우
   "만기시 잔존가치 금액" 만큼 "원 계약"상 유예금이 변제된 것으로 봅니다. 즉 차량의 매각 대금은 전액 "원 계약"상 유예금의 변제에 충당되고, 충당 후 남은 나머지 유예금도 "갑"이 제5조에 따라 "감가금액의 합" 및 "초과 운행부담금"을 "을"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모두 변제된 것으로 봅니다.
   2) "매각대금 등의 합"이 약정잔존가치금액 보다 큰 경우
   "갑"은 "병"으로부터 "매각대금 등의 합"과 약정잔존가치금액의 차액 만큼을 지급받습니다.

제8조 장애사유의 보완

아래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갑"은 경매 시작전까지 지체없이 그 장애사유를 해소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본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1. "원계약"에 따른 할부금, 이자, 연체 이자 등 "원계약"상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대상 차량에 미납된 공과금(제세포함), 과태료 등이 있는 경우
3. 법원 가압류, 압류, 등 차량 매매에 제약 사항이 있는 경우
4. "갑"이 제 5조에 따른 "감가금액의 합" 및 "초과운행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등 본 "추가약정서"상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9조 서비스의 거절

차량 매각 신청시 대상차량은 즉시 운행가능 상태이어야 하며 차량에 추가적인 장비를 장착한 경우,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시한(만기일 18시)까지 원상태로 회복한 후 인도하여야 합니다. 아래 각 항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으며, 이 경우 "갑"은 "을"에게 유예금을 직접상환하거나 만기 연장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1. "원계약"의 "만기일" 1개월 전 이후에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또는 "원계약"의 만기일 18시를 경과하여 대상차량을 "병"에게 인도하는 경우
2.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시한(만기일 18시)까지 원상회복을 하지 않은 경우 대상차량을 인도하는 경우
3. 인도일 현재 중도해지, 기한이익 상실 등의 사유로 인해 "원계약"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4. 대상차량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승계 포함)
5. 자동차의 파손, 임의개조로 인하여 정상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자동차의 하자 및 수리사실, 주행거리등을 고의로 은폐 · 조작한 경우
6. 자동차의 침수, 전복, 화재, 절단 등 자동차상태가 수리 불가능 하거나 원상회복을 하더라도 심각하게 잔존가치가 훼손되는 경우
7. 대상차량의 소유권 이전에 장애가 있는 경우 (장애사유 : 저당권설정, 가압류, 가처분, 체납처분 등)

제10조 양도 및 이전의 금지

"갑"은 본 "추가약정"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을"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제11조 준거법 및 관할법원

본 "추가약정"은 대한민국 법령에 의해 규율됩니다. 본 "추가약정"과 관련하여 "갑"과 "을"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양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해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원만한 해결이 어려운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년 월 일

본인은 "잔존가치보장서비스에 관한 추가약정서"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받고 이해한 후 서비스 가입을 신청합니다.

"갑" : _____ (인)

"을" :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주)

개인(신용)정보 필수적 수집 · 이용 동의서

※ 아래의 동의사항은 대출계약 및 유지를 위한 필수 사항입니다.

1. 개인(신용)정보 필수적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이하 "MBFSK")와의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MBFSK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 ·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 제2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MBFSK가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 · 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계약의 체결 · 유지 · 이행 · 관리 · 개선(리스크 관리 모형 개발), 신청 상품 및 관련 서비스 제공 및 정산,차량 구매에 따른 보험가입, 법령상 의무이행, 금융사고 조사, 신용질서 문란행위 조사, 분쟁처리, 전화상담업무, 민원처리, 본인 여부 확인, 공증, 채권추심, 거래제한대상(Sanction list)확인

• 수집 · 이용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1)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주민등록증 발급일, 연락처(휴대폰, 자택, 직장), 주소(자택,직장), 이메일, 직장명, 부서, 직위, 성별, 국적,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음성data, 차량정보

2) 신용거래정보 : 귀사 및 타 금융사의 본 거래 이전 및 이후의 대출, 보증, 담보제공, 신용카드, 할부금융 등 상거래 관련 거래의 종류, 기간, 금액, 이용한도 등 거래 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3) 신용도정보 : 신용등급, 신용조회기록, 채무재조정약정, 연체, 부도, 대위변제, 기타 신용질서 문란행위 관련 금액, 발생 · 해소 시기 등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4) 신용능력정보 : 재산 · 채무 ·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등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5) 공공기관정보 : 개인회생,파산,면책,채무불이행자 등재등 법원의 재판 · 결정정보, 체납정보, 주민등록관련정보, 사회보험 · 공공요금관련정보, 행정처분에 관한 정보 등 본인 식별 · 신용도 및 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공공기관 보유정보

6) 기타 계약 및 서비스의 체결 · 유지 · 이행 · 관리 · 개선 등과 관련하여 본인이 제공한 정보

※이하에서는 개인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도정보, 신용능력정보, 공공기관정보에 해당하는 각각의 개별정보 명칭은 생략합니다.

• 개인(신용)정보의 보유 · 이용 기간

거래 종료(채권 · 채무 관계 종료)일로부터 5년 (단, 관련법령의 별도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따름)

거래거절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 대출 신청시점으로부터 3년 경과시 완전 파기

본인은 귀사가 상기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미동의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위 개인(신용)정보 필수적 수집 · 이용에 동의합니다.

※ 귀하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위 사항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거래관계의 설정 또는 유지가 불가능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대출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회기록은 대출이 실행되지 않는 한 타 금융회사 등에 제공되지 않고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대출이 실행된 이후에는 귀하의 신용정보 조회기록이 타금융기관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본 인 성 명	인 / 서명	생 년 월 일	
연대보증인 1 성 명	인 / 서명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 ☐미동의	생 년 월 일	
연대보증인 2 성 명	인 / 서명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 ☐미동의	생 년 월 일	

2. 개인(신용)정보 조회에 관한 사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라 귀사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신용조회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본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하거나, 공공기관을 통해 본인임을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조회할 개인(신용)정보

– 개인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도정보, 신용능력정보, 공공기관정보

– 기타 본인의 신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신용등급, 신용조회, 채무재조정약정 정보 등)

• 조회 목적

계약의 체결 · 유지 · 이행 · 관리 · 개선–신용도 판단, 거래관계의 설정, 유지 및 사후관리, 통계분석 및 정책판단의 자료 활용, 신용 관련 모형 개발 및 분석을 위한 자료로 활용

• 조회동의 효력기간

귀하가 상기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당해 거래 종료일까지 상기 동의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다만, 이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동의의 효력은 소멸합니다.

본인은 귀사가 상기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미동의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위 개인(신용)정보 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본 인 성 명	인 / 서명	생 년 월 일	
연대보증인 1 성 명	인 / 서명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 ☐미동의	생 년 월 일	
연대보증인 2 성 명	인 / 서명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 ☐미동의	생 년 월 일	

개인(신용)정보 필수적 제공 동의서

※ 아래의 동의사항은 대출계약 및 유지를 위한 필수 사항입니다.

1. 개인(신용)정보 필수적 제공에 관한 사항

이 계약과 관련하여 귀사가 본인으로부터 취득한 개인(신용)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22조, 제2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본인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귀사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아래와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에 개인(신용)정보 제공

1) 개인(신용)정보를 제공 받는 자
- 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구)전국은행연합회)
- 신용조회회사 : 나이스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2) 개인(신용)정보 제공 목적
- 본인의 신용도 평가, 실명확인 등 신용조회업무, 본 계약 및 본 계약 이전 발생 계약의 유지 또는 사후관리 등
- 신용정보의 집중관리 및 활용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3) 제공대상 개인(신용)정보 : 개인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도정보, 신용능력정보, 공공기관 정보

4) 제공받는자의 개인(신용)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조회회사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약에 근거한 기간까지

(2) 거래목적 달성을 위한 개인(신용)정보 제공(업무처리 수탁업체 제공 등) :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름

1)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할부금융, 리스약정 (차량수입사 및 딜러사)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한성자동차㈜ 더클래스효성㈜, ㈜모터원, 스타자동차㈜, 중앙모터스㈜, 경남자동차판매㈜, 진모터스㈜, 신성자동차㈜, 케이씨씨오토㈜, 교학모터스㈜, 한성모터스㈜, 다임러 트럭 코리아㈜ 및 다임러 트럭 코리아의 각 지점
고객 반환차량 의 인도/인수행위 정산금액안내 및 상담업무	리모코리아주식회사, ㈜오토마트
자동차 할부·리스 관련 업무수탁자	FM (Finance Manager) / FA (Finance Assistant) / FC (Finance Consultant) / RC (Refinance consultant)
중고차 할부약정/리스이용자 변경 업무 대행	디케이 모터스㈜
컨틴전시보험 (신차 보상 보험)/ 기업비용 보상 보험 (신차 보상 보험, 3-Care Plus Program, Good Driver Program)/잔존물회수보험 (중고차 잔존가치 보장 보험)/CPM (Contractor's Plant Machinery Insurance), 수리비용보상보험 (타이어보상보험, Body Care Program)	에이온코리아㈜ JLT코리아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DB손해보험
고객안내문, 청구서발송대행	아림디엠㈜
고객안내문 E-MAIL 발송대행	메이크빌
문자서비스 (SMS / LMS)	㈜ LG유플러스, 메이크빌
전산시스템 유지 및 운영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 LG유플러스 조은 I&S Concur Technologies Australia Pty Ltd. SK Broadband 휴먼트리온, 웨인테크놀로지, 세틀뱅크 드림시큐리티인우기술, 데이터메이션 Chrysalis Solmotive Ltd., ㈜케이티
고객만족도 조사	Qualtrics
거래제한대상(Sanction list)확인	다임러그룹(Daimler AG)
카드 포인트 지급용	신한카드

공증	법무법인 양헌, 법무법인 신한
송무업무대행	법무법인 화담, 서울법무사합동사무소
채권추심	에스엠 신용정보㈜(구 솔로몬 신용정보 주식회사) 중앙 신용정보 주식회사
근저당해지업무	㈜오토클릭서비스
법률자문/소송대리	법무법인 광장 (LEE & KO)
소유권이전, 자동차 등록관련업무대행	㈜오토클릭서비스
회계감사자문	삼정회계법인
원천세/부가세신고자료	한영회계법인
문서(계약서등)보관	통인안전보관
행낭서비스	성화기업택배
디지탈에이전시	Commfunny
PR 대행	Unicomm
웹사이트유지보수	네오엠씨
퀵서비스	Gogovan Korea
공공기관	과태료 범칙금 관련기관 범죄행위 관련 수사 및 조사기관 기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실적분석·보고 및 감사	다임러그룹 본사(Daimler AG) 및 지역본부 (Daimler South East Asia Pte. Ltd.)

2) 개인(신용)정보 제공 목적

자서서류대행, 공동마케팅 비용정산, 차량 등 담보물관리/평가, 본인인증, 신청서 등 문서 관리(입력 · 스캔 · 보관 · 폐기), 우편물(명세서 등) 배송 및 반송, 전화상담, 전산처리 및 개발 · 유지 · 보수, 권원조사/권리조사, 신용조사/채권추심, 결제대금출금, 사은품 · 판촉물 발송, 법조치 업무, 법률자문, 녹취록 작성, 녹취서버 운영, SMS발송, 자동차 공매/이전/등록, 자동차 대출 제휴카드 발급, 자동차 구입 · 리콜 · 금리정산, 자동차 할부(대출) 중개 · 알선, 자동차 유지관리, 사고대차지급, 자동차 리스중개 · 알선 비용 및 수수료 정산, 리스반납 차량처리, 자동차보험 및 사고관리, 과태료/범칙금 처리, 범죄행위 관련 수사 · 조사 협조, 금융사고방지 등을 위한 공공기관 자료제출, 거래제한대상(Sanction list)확인, 선불카드포인트 지급, 실적분석 · 보고 및 감사, 공증, 근저당 해지업무, 회계감사자문, 세무, 고객만족도 조사

3) 제공대상 개인(신용)정보 : 필수적 수집, 이용에 동의한 개인(신용)정보

4) 제공받는 자의 개인(신용)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위탁계약 종료 시 또는 위탁업무 완료 시 (단, 관련법령의 별도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따름)

(3) 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귀하의 채무관련 개인(신용)정보를 보증인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제공

본인은 귀사가 상기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미동의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위 개인(신용)정보 필수적 제공에 동의합니다.

※ 상기 내용이 변동되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그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 귀하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위 사항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거래관계의 설정 또는 유지가 불가능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년 월 일

본 인 성 명	인 / 서명	생 년 월 일	
연대보증인 1 성 명	인 / 서명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 ☐미동의	생 년 월 일	
연대보증인 2 성 명	인 / 서명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 ☐미동의	생 년 월 일	

개인(신용)정보 선택적 수집 · 이용 동의서

귀하는 개인(신용)정보의 선택적인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품 · 서비스 소개 및 권유, 사은행사(경품, 사은품 제공 등), 판촉행사(특판금리 등)등 이용목적에 따른 혜택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밖의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은 없습니다.

1. 개인(신용)정보 선택적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1) 금융상품 안내 및 이용권유를 위한 수집 · 이용 ☐동의 ☐미동의

1)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 귀사 및 제휴사 상품 · 서비스 안내 및 이용권유, 시장조사 및 상품 · 서비스 연구개발

2) 수집, 이용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

a) 개인식별정보 : 성명, 생년월일, 사업자 번호, 연락처(휴대폰, 자택, 직장), 이메일, 직장명, 성별, 국적, 차량 정보(차종, 연식, 차대번호 등)

b) 신용거래정보 : 귀사 및 타 금융사의 본 거래 이전 및 이후의 대출, 보증, 담보제공, 신용카드, 할부금융 등 상거래 관련 거래의 종류, 기간, 금액, 이용한도 등 거래 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c) 거래 신청서에 기재된 정보 혹은 고객이 제공한 정보 : 차량 계약 정보(차종, 계약 딜러사, 계약 전시장, 계약 직원 등), 금융 상품 정보(상품 종류, 계약 번호, 잔존가치, 월 납입금, 잔여원금 등), 선택 부가 서비스 정보(신차교환프로그램, 3-Care Plus, Good Driver Program, Body Care Program 등)

3) 개인(신용)정보의 보유 · 이용기간 : 계약 종료시까지

(2) 금융상품 이외의 부수서비스 안내 등을 위한 수집 · 이용 ☐동의 ☐미동의

1)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 계약갱신 등 여신회사의 부수업무와 관련한 마케팅활동

2) 수집, 이용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

a) 개인식별정보 : 성명, 생년월일, 사업자 번호, 연락처(휴대폰, 자택, 직장), 이메일, 직장명, 성별, 국적, 차량 정보(차종, 연식, 차대번호 등)

b) 신용거래정보 : 귀사 및 타 금융사의 본 거래 이전 및 이후의 대출, 보증, 담보제공, 신용카드, 할부금융 등 상거래 관련 거래의 종류, 기간, 금액, 이용한도 등 거래 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c) 거래 신청서에 기재된 정보 혹은 고객이 제공한 정보 : 차량 계약 정보(차종, 계약 딜러사, 계약 전시장, 계약 직원 등), 금융 상품 정보(상품 종류, 계약 번호, 잔존가치, 월 납입금, 잔여원금 등), 선택 부가 서비스 정보(신차교환프로그램, 3-Care Plus, Good Driver Program, Body Care Program 등)

3) 개인(신용)정보의 보유 · 이용기간 : 계약 종료시까지

• 이용권유 방법

☐ 전부동의 (☐ 전화 ☐ 문자메세지 ☐ 서면 ☐ 이메일) ☐ 동의하지 않음

고객님께서 동의하시면 당사가 제공하는 유익한 서비스나 제휴혜택 등을 전화,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면, 이메일 등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에 동의하셨더라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용권유를 목적으로 하는 연락에 대한 중단을 언제든지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표전화 : 1577-2320/ 홈페이지 : www.mercedes-benz-financial.co.kr)

※ 상품 변경 안내 등 필수 고지사항은 상기 동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년 월 일

본 인 성 명		인 / 서명	생 년 월 일	

2. 개인(신용)정보의 선택적 제공에 관한 사항

(1) 자동차 수입사, 판매사 및 재금융 컨설턴트(Refinance Consultant)에게 공동 마케팅을 위하여 제공 ☐동의 ☐미동의

1)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주), 한성자동차(주), 더클래스효성(주), (주)모터원, 스타자동차(주), 중앙모터스(주), 경남자동차판매(주), 진모터스, 신성자동차(주), 케이씨씨오토(주), 교학모터스주식회사, 한성모터스(주), 다임러 트럭 코리아(주), 디케이모터스(주) 및 각사 소속 영업직원, Chrysalis Solmotive Ltd, 재금융 컨설턴트(Refinance Consultant), 다임러그룹 본사(Daimler AG) 및 지역본부(Daimler South East Asia Pte. Ltd.).

2) 개인(신용)정보 이용목적

- 관련 편의제공(사은품 할인쿠폰 제공 등), 상품 및 서비스 홍보 및 마케팅, 회원유치, 서비스 이용 권유 등

- 제휴 업체의 마케팅 목적, 심사목적, 부가서비스 개발, 고객관리 목적,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이 규정한 바에 따라 본인의 전화 또는 FAX를 통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제공

- 새로운 상거래 설정을 위한 청약, 부가서비스 개발 목적으로 제공

- 귀사가 영위하는 아래 업무를 귀사와 위탁 계약을 체결한 대출모집인 또는 외부업체(제휴업체와위탁계약을 체결한 외부업체 포함)가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공 : 마케팅 목적의 우편물, SMS, e-mail 발송, 전화권유판매, 시장조사 research 업무, 상품 서비스 소개 및 이용 권유 업무 등

3) 제공대상 개인(신용)정보 : 필수적 수집, 이용 동의서에서 정하는 개인(신용)정보

a) 개인식별정보 : 성명, 생년월일, 사업자 번호, 연락처(휴대폰, 자택, 직장), 이메일, 직장명, 성별, 국적, 차량 정보(차종, 연식, 차대번호 등)

b) 신용거래정보 : 귀사 및 타 금융사의 본 거래 이전 및 이후의 대출, 보증, 담보제공, 신용카드, 할부금융 등 상거래 관련 거래의 종류, 기간, 금액, 이용한도 등 거래 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c) 거래 신청서에 기재된 정보 혹은 고객이 제공한 정보 : 차량 계약 정보(차종, 계약 딜러사, 계약 전시장, 계약 직원 등), 금융 상품 정보(상품 종류, 계약 번호, 잔존가치, 월 납입금, 잔여원금 등), 선택 부가 서비스 정보(신차교환프로그램, 3-Care Plus, Good Driver Program, Body Care Program 등)

4) 제공받는 자의 개인(신용)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제공일로부터 (2)년까지

(2)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한 제휴 보험사에 제공 ☐동의 ☐미동의

1)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 에이온코리아㈜ 및 보험회사 (메리츠 화재㈜ / 삼성화재㈜ / DB손해보험 / AXA손해보험, JLT코리아)

2) 개인(신용)정보 이용목적 : 보험 가입 안내, 보험상품과 연계된 제휴금융상품이용에 따른 공동마케팅, 부가서비스 제공, 제휴 보험사 광고

3) 제공대상 개인(신용)정보 : 생년월일, 성명, 연락처, 계약전시장, 계약직원명, 계약직원연락처

4) 제공받는 자의 개인(신용)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제공일로부터 (2)년까지

년 월 일

본 인 성 명		인 / 서명	생 년 월 일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귀하는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의 선택적인 수집 • 이용 •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의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 동의 ☐ 미동의

1) **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 당사가 제공하는 자동차 금융상품(할부 및 리스 등)의 대상이 되는 차량의 반납거부, 관련 채무 불이행, 횡령, 도난, 분실 등으로 인해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당한 이익과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발생한 경우 해당 차량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차량의 점유를 회복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 계약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합니다. ("Skip Loss 기능")

2) **수집하는 정보의 항목:** 자동차 금융상품의 대상이 되는 차량의 위치정보, 성명, 연락처(휴대폰, 자택, 직장), 주소(자택, 직장)

3) **정보의 보유 • 이용기간 :** 상기 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달성시까지 (관련 자동차 금융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대상 차량의 점유를 회복해야 할 필요가 존재한다면 그러한 목적이 달성되는 시점까지 보유 • 이용합니다)

4) **정보의 수집 방식 :** 당사는 귀하가 정보의 수집 • 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자동차 금융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며, 자동차 금융상품의 대상이 되는 차량의 위치정보는 해당 정보를 적법하게 수집하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식회사(위치정보사업자)로부터 제공받습니다.

2.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 동의 ☐ 미동의

1) **정보를 제공받는 자 :** 경찰서, 관세청 기타 관련 법령상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정부기관

2) **제공받는 자의 정보 이용 목적 :** 차량의 소재지 탐지 및 점유 회복, 기타 관련 법령상 의무 이행 등

3) **제공하는 정보 항목 :** 자동차 금융상품의 대상이 되는 차량의 위치정보, 성명, 연락처(휴대폰, 자택, 직장), 주소(자택, 직장)

4) **제공받는 자의 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상기 정보의 제공 목적 달성시까지 (예를 들어, 차량의 점유 회복시 또는 관련 법령상 의무 이행 완료시 등)

3. 위치정보 수집장치 부착에 관한 고지

귀하가 자동차 금융상품(할부 및 리스 등)을 통해 사용하게 되는 차량에는 위치정보 수집장치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년 월 일

본인성명	인 / 서명

myService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주)(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my Service(https://mymbfs.co.kr)"(이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회원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myService"라 함은"회사"가 "회사"와 할부 또는 리스(금융리스, 운용리스)등 금융서비스 이용 계약을 맺은 고객을 대상으로 "회원"의 금융계약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를 말합니다. 이하 본 약관에서 "서비스"라고 하면 특별히 달리 표시하지 않은 이상 "myService"를 말합니다.
2. "회원"이라 함은 "회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 아이디(ID)를 부여받은 "이용자"로서 "회사"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으며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3.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정하고 "회사"가 승인하는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으로서, 회원이 지정한 고유 e-mail 주소를 말합니다.
4. "비밀번호(PASSWORD)"라 함은 "회원"이 부여받은 "아이디"와 일치되는 "회원"임을 확인하고 비밀보호를 위해 "회원" 자신이 정한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개정)
① 본 약관의 내용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시하고, 이에 동의한 회원이 "서비스"에 가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본 약관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한민국 법령의 범위 내에서 개정할 수 있으며,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예정일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서비스" 초기화면에 그 적용예정일 7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하는 것 외에 이메일 발송 등 전자적 수단을 통해 별도로 통지합니다.
③ 회원은 개정된 약관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개정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회사의 전항 단서에 따른 약관의 불리한 변경에 대하여 적용예정일까지 회사에게 부동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경우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제2장 회원가입

제4조 (회원가입)
① 회원가입은 "회사"와 할부 또는 리스(금융리스, 운용리스) 등 금융서비스 이용계약을 맺은 고객이 본 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하고 회원가입 신청을 한 후 "회사"가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체결됩니다.
② "회사"와 금융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거나 제한됩니다.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2.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이용한경우
3.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회사가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4.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규정한 제반 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④ "회사"는 서비스 관련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회원가입신청의 승낙을 하지 아니하거나 유보한경우, "회사"는 이를 신청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신청자에게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⑥ 회원가입계약의 성립 시기는 "회사"의 승낙이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제5조 (회원정보의변경)
① "회원"은 개인정보관리화면을 통하여 언제든지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은 회원가입 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온라인으로 수정을 하거나 전자우편 기타 방법으로 "회사"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③ 제2항의 변경사항을 "회사"에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6조 ("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관리에 대한 의무)
①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를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안됩니다.
② "회원"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에 의해 사용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회사"에 통지하고 "회사"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해당 "회원"이 "회사"에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거나, 통지한 경우에도 "회사"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7조 ("회원"에 대한 통지)
① "회사"가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아이디로 지정한 email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회원" 전체에 대한 통지의 경우 7일 이상 "회사"의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제1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1항의 통지를 합니다.
③ "회사"는 시스템의 유지보수, 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회사"는 서비스 중단 예정사실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회원"에게 서면, 전화, 전자우편, 휴대폰 메시지 등으로 30일 전에 안내하기로 합니다. 사후 고지할 경우에는 즉시 하도록 합니다.

제8조 (회원탈퇴 및 자격상실 등)
①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있습니다.
1. 가입신청 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회사"의 서비스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상거래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3. "회사"를 이용하여 법령 또는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공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경우
② "회사"가 회원자격을 제한 · 정지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거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자격을 상실시킬수 있습니다.
③ "회사"가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회원등록 말소 전에 최소한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제3장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제9조 (서비스의 내용)
① "회사"가 "myService"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정보의 제공 : 차종, 차량번호, 계약번호, 금융상품정보 등
2. 납입내역, 상환일정 등의 조회
3. 영수증 출력
4. 기타 문의사항, 고객상담 등
② 회사는 "회원"의 이용신청을 승낙한 때부터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단, 일부 서비스의 경우에는 지정된 일자부터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③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장애로 인하여 서비스를 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즉시 홈페이지에 공시하거나 회원에게 이를 통지합니다.

제10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법령과 이 약관이 정하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을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개인정보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회사"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으로부터 제기된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 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처리합니다. "회원"이 제기한 의견이나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게시판을 활용하거나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그 처리과정 및 결과를 전달합니다.
④ "회사"는 이 약관에서 정한 의무위반으로 인하여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11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 내용의 기재
2. 타인의 정보도용
3. "회사"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4. "회사"가 금지한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송신 또는 게시
5. "회사"와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6. "회사"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7. 외설 또는 폭력적인 말이나 글, 화상, 음향, 기타 공공질서에 반하는 정보를 "회사"의 사이트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8.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② "회원"은 관계법령, 이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공지한 주의사항, "회사"가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서비스의 제공 및 중단)
① 서비스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두절 또는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제7조["회원"에 대한 통지]에 정한 기준에 따라 "회원"에게 통지하거나 게시합니다. 다만, "회사"가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통지하거나 게시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상당한 이유 없이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회원"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합니다. 다만, "회사"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회사"는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경우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정기점검 시간은 서비스 제공화면에 공지한 바에 따릅니다.
⑤ 사업종목의 전환, 사업의 포기, 업체간의 통합 등의 이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제7조["회원"에 대한 통지]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당초 "회사"에서 제시한 조건에 따라 "회원"에게 보상합니다.

제13조 (콘텐츠서비스의 변경)
① "회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의 내용, 이용방법, 이용시간을 변경할 경우에 변경사유,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 등을 그 변경 전 7일 이상 초기화면에 게시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에 의한 서비스의 변경 및 제3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보상합니다.

제14조 (저작권 등의 귀속)
① "회사"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②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 제휴계약에 의해 제공되는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해당 제공업체에 귀속됩니다.
③ "회원"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회사" 또는 제공업체에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회사" 또는 제공업체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5조 (개인정보보호)
① "회사"는"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회사"가 문의한 사항에 관해 "이용자"는 진실한 내용을 성실하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가 "회원"의 개인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당해 "회원"의 동의를 받습니다.
③ "회사"는 "회원"이 이용신청 등에서 제공한 정보와 제1항에 의하여 수집한 정보를 당해 "회원"의 동의 없이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④ "회사"가 제2항과 제3항에 의해 "회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정보의 내용, 정보의 수집 목적 및 이용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 사항(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등에 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을 명시하고 고지하여야 합니다.
⑤ "회원"은 언제든지 제3항의 동의를 임의로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⑥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관리자를 한정하여 그 수를 최소화하며, "회원"의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등으로 인한 "회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⑦ "회사" 또는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회원"이 동의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사용할 수 있으며,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⑧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16조 (면책조항)
①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와 관련하여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제17조 (분쟁의해결)
①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와 "회원"은 분쟁의 해결을 위해 성실히 협의합니다.
② 본 조 제1항의 협의에서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양 당사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와 이용자간에 제기된 소송에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합니다.

년 일 일

myService 가입동의서

*myService는 언제 어디서든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의 고객서비스를 스마트하게 제공하기 위한 온라인서비스입니다.
(myService 는 https://mymbfs.co.kr 또는 모바일앱 "myMBFS"를 통해, 나의 계약정보 및 납입내역 확인, 금융상품 및 각종 프로모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아래의 E-mail 주소를 이용하여 myService에 가입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본 인 성 명 _____ (인)

E-mail 주 소 _____ @ _____

여신전문금융회사 표준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여신금융협회 사후보고 접수일자 : 2018.02.13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메르세데스-벤츠 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이하 "금융회사"라 합니다.)와 이용자 사이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거래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하고 거래당사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금융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제공하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비대면 · 자동화된 방식으로 직접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2. "전자지급거래"라 함은 자금을 주는 자(이하 "지급인"이라 한다)가 금융회사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받는 자(이하 "수취인"이라 한다)에게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를 말합니다.
3. "이용자"라 함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금융회사와 체결한 계약(이하 "전자금융거래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4. "전자금융보조업자"라 함은 금융회사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를 보조하거나 그 일부를 대행하는 업무를 행하는 자 또는 결제중계시스템의 운영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가.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업자의 신용카드 승인 및 결제 그 밖의 자금정산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자
   나.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은행업을 영위하는 자의 자금인출업무, 환업무 및 그 밖의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자
   다. 전자금융업무와 관련된 정보처리시스템을 해당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를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자
   라. 가목부터 다목의 사업자와 제휴, 위탁 또는 외부주문(이하 "외부주문등"이라 한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자
5. "전자적 장치"라 함은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컴퓨터, 전화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를 말합니다.
6.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합니다.
   가.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나.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생성정보 또는 공인인증서
   다. 금융회사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라. 이용자의 생체정보
   마.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7. "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전자자금이체,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신용카드, 전자채권 그 밖에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을 말합니다.
8. "전자자금이체"라 함은 지급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금융회사에 개설된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전자적 장치에 의하여 자금을 이체하는 것을 말합니다.
9. "거래지시"라 함은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라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10. "전자지급결제대행"이라 함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11. "직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이용자와 가맹점 간에 전자적 방법에 따라 금융회사의 계좌에서 자금을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그 대가의 지급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에서 발행한 증표(자금을 융통받을 수 있는 증표를 제외합니다)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를 말합니다.
12.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합니다. 다만, 전자화폐를 제외합니다.
   가. 금융회사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될 것
   나.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2개 업종(「통계법」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상의 업종을 말합니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상일 것
13. "가맹점"이라 함은「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5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14. "오류"라 함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전자금융거래계약 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15. "추심이체"라 함은 수취인의 전자적 장치를 통한 추심지시에 따라 금융회사가 지급인의 출금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다른 금융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16. "영업일"이라 함은 금융회사의 영업점에서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날을 말합니다.

② 이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전자금융거래법」등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조 (적용되는 거래)

이 약관은 금융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다음 각 호의 전자금융거래에 적용됩니다.

1.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에 의한 거래
2. 컴퓨터에 의한 거래
3. 전화기에 의한 거래
4. 기타 전자적 장치에 의한 거래

제4조 (전자금융거래계약의 체결 및 해지)

①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금융회사와 별도의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결제대금, 승인내역 등 단순조회
2.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에 의한 거래

② 전자금융거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권을 가진 자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적 장치 등에 의하여 금융회사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제5조 (접근매체의 발급 및 등록)

① 금융회사가 접근매체를 발급할 때에는 이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 발급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는 접근매체의 갱신 또는 대체발급 등을 위해 이용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신청이나 본인확인 없는 때에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1.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전자금융거래법」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전자화폐인 경우
2.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일전 6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없는 접근매체에 대하여 이용자로부터 갱신 또는 대체발급에 대한 서면 (「전자서명법」제2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하 "공인전자서명"이라 한다)이 있는 전자문서 포함) 동의를 얻은 경우
3.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일전 6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있는 접근매체의 경우에는 그 예정일로부터 1월 이전에 이용자에게 발급 예정사실을 알린 후 20일 이내에 이용자로부터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제6조 (접근매체의 관리)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에 대하여 다른 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는 행위
2.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3.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 노출, 방치하는 행위

제7조 (이용시간)

① 금융회사는 이용자에게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금융회사는 이용시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을 이용자가 접근하기 쉬운 전자적 장치 및 영업점을 통하여 변경 1개월 전부터 1개월간 알립니다.

제8조 (수수료)

①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이용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금융회사는 수수료(율)를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영업점 및 이용자가 접근하기 쉬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게시하고, 수수료(율)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5조를 준용합니다.

제9조 (추심이체의 출금 동의)

① 금융회사는 추심이체를 실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라 미리 지급인으로부터 출금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1. 금융회사가 지급인으로부터 서면(공인전자서명 또는 금융회사가 정한 기타 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이하 이 조에서 같습니다.)이나 전화녹취(ARS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출금신청을 받는 방법
2. 수취인이 지급인으로부터 서면이나 전화녹취(ARS를 포함한다)에 의한 출금의 동의를 받아 금융회사에게 전달(전자적인 방법에 의하여 출금동의의 내역을 전송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하는 방법

② 지급인은 수취인의 거래지시에 따라 지급인의 계좌의 원장에 출금기록이 끝나기 전까지 금융회사에 출금동의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량으로 처리하는 거래 또는 예약에 의한 추심이체거래의 경우에는 지급인은 출금일 전영업일까지 금융회사에 출금 동의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거래의 제한)

① 금융회사는 시스템의 유지보수, 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서비스 중단 예정사실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서면, 전화, 전자우편, 휴대폰 메시지 등으로 30일 전에 안내해야 합니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금융회사는 사전 안내 없이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자에게 서비스 중단 사실 등을 즉시 안내해야 합니다.

1. 긴급한 시스템 유지보수, 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2. 통신장애, 정전 등이 발생한 경우
3. 서비스 이용 급증 등으로 서비스 제공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4. 해킹 등으로 금융회사 또는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공인인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공인인증서가 취소된 경우
6.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거부한 경우
7. 기타 이용자가「여신전문금융업법」,「전자금융거래법」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

③ 이용자의 거래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및 통신장애 등으로 거래지시가 이행되지 않아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회사가 배상하기로 합니다.

제11조 (전자지급거래의 효력)

①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의 효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때에 발생합니다.

1. 전자자금이체의 경우 :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에 대하여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 계좌의 원장에 입금기록이 끝난 때
2. 전자적 장치로부터 직접 현금을 출금하는 경우 : 수취인이 현금을 받은 때
3.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로 지급하는 경우 :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한 때
4. 그 밖의 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 : 거래지시 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난 때

② 금융회사는 이용자의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거래지시에 따라 지급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령한 자금을 이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12조 (거래지시의 철회 및 제한)

① 이용자는 제11조에 의하여 완료되기 전까지 전자금융거래시 이용한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거나 또는 금융회사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거래지시를 철회 할 수 있습니다.

② 대량으로 처리하는 거래 또는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및 추심이체는 이체일 전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시 이용한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거래지시를 철회 할 수 있습니다.

③ 실시간 이체되는 거래 등 전자금융거래의 성질상 금융회사가 거래의 완료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거래지시 철회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④ 이용자의 사망 · 피성년후견선고 · 피한정후견선고 · 피특정후견선고나 이용자 또는 금융회사의 해산 · 합병 · 파산은 그 자체로는 거래지시를 철회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 되지 아니하며 금융회사의 권한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제13조 (오류의 정정 등)

①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금융회사는 전항의 규정에 따른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원인과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③ 금융회사가 스스로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하며, 오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오류의 원인과 처리 결과를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으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14조 (사고시의 처리)

① 이용자는 접근매체의 도난 · 분실 · 위조 또는 변조의 사실을 알았거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 등에서의 사고 및 해킹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금융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신고는 금융회사가 이를 접수한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하며 제1항의 신고를 철회할 경우에는 이용자 본인이 금융회사에 서면, 전화 등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③ 금융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사고 사유를 지체 없이 조사하여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서면, 전화 등으로 14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5조 (손해배상 및 면책)

① 금융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의 통지를 받은 후에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②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합니다.
1.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전자금융거래법」제18조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2.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3. 금융회사가 접근매체를 통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하는 것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시 사전에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4. 이용자가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 · 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 누설 · 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5. 법인(「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합니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금융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회원, 직불카드(직불전자지급수단을 포함한다) 회원, 선불카드(선불전자지급수단을 포함한다) 회원 또는 이용자에 대한 금융회사의 책임과 관련하여「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는 등 다른 법령에 이용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우선 적용됩니다.
⑤ 금융회사는 이 조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제16조 (전자금융보조업자 등의 지위)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전자금융보조업자 및 제2조 제4호 라목에 따른 제휴업체 등의 고의나 과실은 금융회사의 고의나 과실로 봅니다.

제17조 (거래기록의 보존)

①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거래기록(조회거래는 제외합니다.)을 5년간 유지, 보존하여야 합니다.
가. 거래의 종류 및 금액, 거래상대방을 나타내는 정보
나. 거래일시,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다.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라. 금융회사가 수취한 전자금융 관련 수수료
마. 추심이체의 경우 이용자의 출금동의 내역
바.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사. 전자금융거래 신청, 조건변경에 관한 내용
아.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②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거래기록을 1년간 유지, 보존하여야 합니다.
가.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나. 전자지급수단의 이용과 관련된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다. 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제18조 (거래기록 및 자료의 제공)

① 금융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융회사가 보존 · 관리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 관련 기록 · 자료를 14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② 이용자가 제공 요청을 할 수 있는 거래기록 및 자료의 범위와 대상기간은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기록 및 기간으로 하며 제공 방법은 금융회사와 이용자 간 협의하여 정합니다.
③ 금융회사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거래기록 및 자료의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이용자에게 확인 및 제공하여야 합니다.
1. 전자적 장치를 통한 제공의 경우에는 즉시
2. 서면 제공 방식의 경우에는 14일 이내

제19조 (통지방법 및 효력)

①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사항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신고한 최종 연락처로 전화, 서면, 전자우편을 이용하거나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기타 전자적 장치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서면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② 금융회사의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도달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거래의 처리결과 등 일반적인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했을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지났을 때 도달된 것으로 추정하며, 이용자가 제20조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20조 (신고사항의 변경 등)

① 이용자가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합니다), 비밀번호, 상호, 전화번호 등 금융회사에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합니다.
② 신고사항의 변경은 금융회사가 제1항의 신고를 접수하고 전산입력에 요구되는 합리적인 시간이 지난 후에 그 효력이 생깁니다.
③ 이용자는 제1항에서 정한 신고사항 외의 각종 통지를 금융회사의 전자금융보조업자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자금융보조업자에게 한 통지는 금융회사에 한 것으로 봅니다.

제21조 (거래내용 녹음)

① 금융회사는 거래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직원과의 전화통화에 의한 거래내용을 녹음할 수 있습니다.
② 녹음된 내용은 해당거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의 증거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자는 금융회사에 녹음된 내용의 청취를 요구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제22조 (비밀보장의무 등)

① 금융회사는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금융거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이용자의 인적사항 및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는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② 금융회사의 관리소홀로 인한 이용자 관련 정보 도난 및 유출시에는 금융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③ 금융회사는 관련 법령이 인정하는 경우 외에 소비자의 사전 동의 없이 광고를 게시 또는 전송하거나 이용자의 휴대폰 및 컴퓨터 등 개인기기의 식별정보(예 : serial, Mac address, UUID 등)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제23조 (약관의 명시 · 교부 · 설명)

① 금융회사는 이용자에게 약관을 명시하여야 하고,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식으로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② 금융회사는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1. 약관의 중요내용을 이용자에게 직접 설명
2.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고 이용자로부터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였다는 의사표시를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수령

제24조 (금융회사의 안정성 확보 의무)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의 종류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

제25조 (약관의 변경)

① 금융회사가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 1개월 전에 그 내용을 해당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 및 영업점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금융회사는 이용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전자적 장치에 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서면, 전자우편 등으로 즉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금융회사가 제1항 및 제2항의 게시하거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내용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이용자는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제26조 (약관적용의 우선순위)

① 금융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②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③ 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선불카드 표준약관, 여신거래기본약관 등 관련 약관이 적용됩니다.

제27조 (이의제기 및 협조)

①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금융회사의 분쟁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가 금융회사의 본점이나 영업점 또는 금융회사의 분쟁처리기구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금융회사는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③ 금융회사는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를 위한 분쟁처리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그 연락처를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④ 이용자는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와 관련한 금융회사의 사고조사 및 관계당국의 수사 또는 조사 절차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28조 (재판관할)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금융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29조 (준거법)

이 약관의 해석 · 적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합니다.

자동차 근저당권설정 계약서

여신금융협회 사후보고 접수일자 : 2016.03.25

채 권 자 겸 근 저 당 권 자 (이하 "갑"이라 칭합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주) 서울특별시 중구 한강대로 416, 10층 (남대문로5가, 서울스퀘어빌딩) 대표이사 힐케 얀센
채 무 자 겸 근저당권설정자 (이하 "을"이라 칭합니다)	성 명 _____ (인) 주 소 _____
채 권 최 고 액	금 _____원정(₩_____)

위 당사간에 다음과 같이 자동차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합니다.

(제1조) 근저당권의 설정 및 효력범위

①소유자는 채무자가 회사에 대하여 부담한, 또는 부담할 다음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소유자의 소유가 된 또는 소유가 될 말미목록 기재한 물건(이하 "저당물건")에 순위 제 1번의 채권 최고금액_____원정의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1. 채무자가 회사와 체결한 주 계약(20 년 월 일 체결)과 관련하여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이자, 지연배상금, 기타 부대채무 포함)

②근저당권의 효력은 근저당권 설정 당시 및 그 이후에 수리, 정비, 구조변경 또는 개조, 기타 사유로 발생하는 본 근저당물건의 부합물 및 종물에도 미칩니다.

③근저당물건의 실제가 본 계약서 끝부분 목록란의 기재나 공부상 기재와 맞지 아니한 부분이 있더라도 본 근저당권은 실제 물건 위에 그 효력이 미치며 회사가 채권보전상의 필요에 따라 청구하는 때에는 소유자는 곧 변경등기나 경정등기 등 필요한 절차를 밟는다.

(제2조) 담보보존의무 및 담보가치유지

①소유자는 회사의 승락 없이 그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멸실, 훼손 등 회사의 채권보전에 지장을 초래할 형상변경 행위를 하거나 근저당권 보존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②소유자는 근저당 물건에 관하여 임대 또는 사용대차계약의 체결,해제,변경이나 갱신 또는 자동차(중장비) 등록원부의 등록사항의 이동 기타 현상을 변경코자 할 때는 사전에 회사의 서면 승락을 얻는다.

③저당물건의 멸실,훼손,공용징수, 기타의 원인으로 인하여 저당물건에 이상이 생기거나 그 가격이 감소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소유자자와 채무자는 이러한 사실을 지체없이 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본조 제3항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자가 제3자로부터 받을 배상금, 보상금 등의 금전이나 물건 등이 있을 때에는 회사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고 회사가 직접 이를 청구, 수령하여 변제기한 전이라도 본 계약에 의한 채무와 비용의 변제에 임의로 충당할 수 있다.

(제3조) 담보가치유지

채무자 또는 소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담보물의 가액 감소가 현저한 경우, 채무자 또는 소유자는 채권보전을 위한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그 원상회복 또는 담보의 보충을 하여야 합니다.

(제4조) 근저당권의 실행 및 근저당물건의 처분, 관리

①저당물건의 처분은 법정절차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소유자가 동의를 한 때에는 회사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 • 시기 • 가격 등을 채무자에게 알리고 처분한 후, 그 취득금에서 근저당권 실행에 관련된 일체의 비용을 뺀 잔액을 여신거래기본약관 제16조에 준하여 충당할 수 있다.

②전항에 의한 저당물건의 처분방법, 시기, 가격, 처분대금의 채무변제충당순위 및 방법 등은 회사와 채무자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고, 회사가 경매에 의하지 않고 저당물건을 임의 처분하는 경우에 소유자는 이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협력하여야 하고 근저당권 실행에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③소유자가 행방을 감추거나 기타의 사유로 말미암아 근저당물건이 정상적으로 관리,유지되지 아니하고 멸실, 훼손, 분실 등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근저당물건을 점유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5조) 제반 절차의 이행과 비용

①회사가 본 계약에 의한 근저당권의 설정, 변경, 이전, 말소 등에 관한 등록 및 기타 제 절차를 요구할 때에는 채무자와 소유자는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회사는 전항의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종류와 산출근거를 채무자와 소유자에게 설명하기로 하는 바, 근저당권 설정, 변경, 이전, 말소(해지) 등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회사가 부담하기로 한다.

③회사가 저당물건의 실황조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한 경우에는 회사가 그 비용을 부담하고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근저당권을 행사를 행사하는 경우에는 채무자 또는 소유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며 그 외 비용부담 주체가 분명하지 않은 비용은 회사와 채무자 또는 소유자가 균분한다.

④ 제3항에 의하여 채무자 또는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 근저당물건의 점유 또는 관리에 관한 비용,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근저당권의 행사를 위한 비용 등 채무자 또는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회사가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6조) 저당물건의 조사

회사가 저당물건의 실황조사나 처분 기타 필요에 의하여 저당물건의 인도나 주유를 요구할 때는 소유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 다른 담보, 보증약정과의 관계

①소유자가 채무자의 회사에 대한 같은 피담보 채무에 관하여 따로 담보를 제공하고 있거나 보증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 담보나 보증은 본 계약에 의하여 변경되지 아니하며 본 계약에 의한 담보책임과 별개의 것으로 누적적으로 적용됩니다.

②담보가치의 하락 등을 대비한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소유자가 같은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담보제공과 동시에 같은 금액으로 연대보증을 한 경우 그 중 어느 하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한 때에는 전항에도 불구하고 그 이행한 범위 내에서 다른 책임도 면합니다.

년 월 일

자동차의 목록	자동차등록번호	차대형식(년식)	차 대 번 호	원 동 기 형 식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자동차 근저당권설정 계약서

여신금융협회 사후보고 접수일자 : 2016.03.25

채 권 자 겸 근 저 당 권 자 (이하 "갑"이라 칭합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주) 서울특별시 중구 한강대로 416, 10층 (남대문로5가, 서울스퀘어빌딩) 대표이사 힐케 얀센
채 무 자 겸 근저당권설정자 (이하 "을"이라 칭합니다)	성 명 _____ (인) 주 소 _____
채 권 최 고 액	금 _____원정(₩_____)

위 당사간에 다음과 같이 자동차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합니다.

(제1조) 근저당권의 설정 및 효력범위

①소유자는 채무자가 회사에 대하여 부담한, 또는 부담할 다음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소유자의 소유가 된 또는 소유가 될 말미목록 기재한 물건(이하 "저당물건")에 순위 제 1번의 채권 최고금액_____원정의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1. 채무자가 회사와 체결한 주 계약(20 년 월 일 체결)과 관련하여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이자, 지연배상금, 기타 부대채무 포함)

②근저당권의 효력은 근저당권 설정 당시 및 그 이후에 수리, 정비, 구조변경 또는 개조, 기타 사유로 발생하는 본 근저당물건의 부합물 및 종물에도 미칩니다.

③근저당물건의 실제가 본 계약서 끝부분 목록란의 기재나 공부상 기재와 맞지 아니한 부분이 있더라도 본 근저당권은 실제 물건 위에 그 효력이 미치며 회사가 채권보전상의 필요에 따라 청구하는 때에는 소유자는 곧 변경등기나 경정등기 등 필요한 절차를 밟는다.

(제2조) 담보보존의무 및 담보가치유지

①소유자는 회사의 승락 없이 그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멸실, 훼손 등 회사의 채권보전에 지장을 초래할 형상변경 행위를 하거나 근저당권 보존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②소유자는 근저당 물건에 관하여 임대 또는 사용대차계약의 체결,해제,변경이나 갱신 또는 자동차(중장비) 등록원부의 등록사항의 이동 기타 현상을 변경코자 할 때는 사전에 회사의 서면 승락을 얻는다.

③저당물건의 멸실,훼손,공용징수, 기타의 원인으로 인하여 저당물건에 이상이 생기거나 그 가격이 감소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소유자자와 채무자는 이러한 사실을 지체없이 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본조 제3항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자가 제3자로부터 받을 배상금, 보상금 등의 금전이나 물건 등이 있을 때에는 회사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고 회사가 직접 이를 청구, 수령하여 변제기한 전이라도 본 계약에 의한 채무와 비용의 변제에 임의로 충당할 수 있다.

(제3조) 담보가치유지

채무자 또는 소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담보물의 가액 감소가 현저한 경우, 채무자 또는 소유자는 채권보전을 위한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그 원상회복 또는 담보의 보충을 하여야 합니다.

(제4조) 근저당권의 실행 및 근저당물건의 처분, 관리

①저당물건의 처분은 법정절차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소유자가 동의를 한 때에는 회사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 • 시기 • 가격 등을 채무자에게 알리고 처분한 후, 그 취득금에서 근저당권 실행에 관련된 일체의 비용을 뺀 잔액을 여신거래기본약관 제16조에 준하여 충당할 수 있다.

②전항에 의한 저당물건의 처분방법, 시기, 가격, 처분대금의 채무변제충당순위 및 방법 등은 회사와 채무자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고, 회사가 경매에 의하지 않고 저당물건을 임의 처분하는 경우에 소유자는 이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협력하여야 하고 근저당권 실행에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③소유자가 행방을 감추거나 기타의 사유로 말미암아 근저당물건이 정상적으로 관리,유지되지 아니하고 멸실, 훼손, 분실 등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근저당물건을 점유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5조) 제반 절차의 이행과 비용

①회사가 본 계약에 의한 근저당권의 설정, 변경, 이전, 말소 등에 관한 등록 및 기타 제 절차를 요구할 때에는 채무자와 소유자는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회사는 전항의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종류와 산출근거를 채무자와 소유자에게 설명하기로 하는 바, 근저당권 설정, 변경, 이전, 말소(해지) 등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회사가 부담하기로 한다.

③회사가 저당물건의 실황조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한 경우에는 회사가 그 비용을 부담하고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근저당권을 행사를 행사하는 경우에는 채무자 또는 소유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며 그 외 비용부담 주체가 분명하지 않은 비용은 회사와 채무자 또는 소유자가 균분한다.

④ 제3항에 의하여 채무자 또는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 근저당물건의 점유 또는 관리에 관한 비용,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근저당권의 행사를 위한 비용 등 채무자 또는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회사가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6조) 저당물건의 조사

회사가 저당물건의 실황조사나 처분 기타 필요에 의하여 저당물건의 인도나 주유를 요구할 때는 소유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 다른 담보, 보증약정과의 관계

①소유자가 채무자의 회사에 대한 같은 피담보 채무에 관하여 따로 담보를 제공하고 있거나 보증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 담보나 보증은 본 계약에 의하여 변경되지 아니하며 본 계약에 의한 담보책임과 별개의 것으로 누적적으로 적용됩니다.

②담보가치의 하락 등을 대비한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소유자가 같은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담보제공과 동시에 같은 금액으로 연대보증을 한 경우 그 중 어느 하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한 때에는 전항에도 불구하고 그 이행한 범위 내에서 다른 책임도 면합니다.

년 월 일

자동차의 목록	자동차등록번호	차대형식(년식)	차 대 번 호	원 동 기 형 식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자동차근저당 설정등록 신청 위임장

자동차 등록사업소 귀중

아래 수임인에게 다음의 내용을 위임합니다.

위임내용 : 자동차 등록법 제37조 및 자동차 등록규칙 제 4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자동차 근저당 설정등록 신청의 건

수 임 인	성 명		전화번호	
	주민번호			
	주 소			

년 월 일

위임인 : 1.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주)**
서울특별시 중구 한강대로 416, 10층 (남대문로5가, 서울스퀘어빌딩)
대표이사 힐케 얀센

2. 성 명 _____ (인)

주 소 _____

자동차저당권 등록 신청서

접 수 번 호
*

* 표시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자동차 등록번호		을부번호	*
저 당 종 류	☐ 단독저당 ☐ 공동저당 ☐ 추가공동저당 ☐ 일부저당말소		
저 당 권 자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주) 서울특별시 중구 한강대로 416, 10층 (남대문로5가, 서울스퀘어빌딩) 대표이사 힐케 얀센		
자동차 소유자	성명(명칭)		
	주 소		
채무자	성명(명칭)		
	주 소		
피담보채권가액 (저당권설정가액)	금 원정 (₩)	변 제 기 한	
이 자 액		이 자 지 급 일	
조건 또는 약정		공동저당자동차대수	
이전·변경사항	변경·이전 전	변경·이전 후	

「자동차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저당권 (☐ 설정 ☐ 말소 ☐ 이전 ☐ 변경)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주)
서울특별시 중구 한강대로 416, 10층 (남대문로5가, 서울스퀘어빌딩)
대표이사 힐케 얀센
법인등록번호 : 110111-2614786

※ 구비서류

1.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 (저당권 말소·이전·변경의 경우)
2.자동차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저당권의 설정·변경의 경우)
3.저당권설정계약서 (저당권 말소·이전·변경의 경우)
4.피담보채권의 양도증명서 (저당권 이전의 경우)
5.저당권의 해지증서 (저당권 이전의 경우)
6.제권판결등본 (공시최고신청의 경우)

여신거래기본약관

여신금융협회 사후보고 접수일자 : 2019.00.00

이 메르세데스벤츠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주) 여신거래기본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메르세데스벤츠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주)(이하 "금융회사"라 합니다.)와 거래처(이하 "채무자"라 합니다)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여신거래의 원활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금융회사는 이 약관을 모든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치 · 게시하고, 채무자는 이를 열람하거나 그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조 (적용범위)

① 이 약관은 금융회사와 채무자(리스이용자 · 할부금융이용자 · 차주 · 할인 신청인 · 지급보증신청인 등 금융회사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사이의 시설 대여(리스), 할부 금융, 대출, 팩토링, 어음할인, 지급보증, 외국환, 기타의 여신에 관한 모든 거래에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은 채무자가 발행 · 배서 · 인수나 보증한 어음(수표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을 금융회사가 제3자와의 여신에 관한 거래에서 취득한 경우에 그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도 적용됩니다. 다만, 제2조, 제3조, 제5조, 제8조, 제12조, 제15조 제1항, 제18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③ 이 약관은 금융회사의 본 · 지점과 채무자(기업의 경우 본 · 지점 포함)의 제1항 및 제2항의 적용범위에 속하는 모든거래와 채무이행에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④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부속약관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2조 (어음채권과 여신채권)

채무자가 발행하거나 배서 · 보증 · 인수한 어음에 의한 여신의 경우, 금융회사는 어음채권 또는 여신채권의 어느 것에 의하여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조 (이자등과 지연배상금)

① 리스료 · 할부금 · 이자 · 할인료 · 보증료 · 수수료 등(이하 "이자 등" 이라고 합니다.)의 율 · 계산방법 · 지급시기 및 방법에 관하여는, 채무자는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금융회사와 채무자간의 약정에 따르기로 합니다.

② 이자 등의 율은 거래계약시에 채무자가 다음의 각 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채무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금융회사가 그 율을 변경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는 것
2. 채무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금융회사는 그 율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는 것

③ 제2항 제1호를 선택한 경우에 채무이행완료 전에 국가경제 및 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으로 계약 당시에 예상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긴 때에는 금융회사는 채무자에 대한 개별통지에 의하여 그 율을 인상 · 인하 할 수 있기로 합니다. 이 경우 변경요인이 해소된 때에는 금융회사는 지체없이 해소된 상황에 부합되도록 변경하기로 합니다.

④ 제2항 제2호를 선택한 경우에 이자 등의 율에 관한 금융회사의 인상 · 인하는 건전한 금융관행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⑤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곧 지급기로 한 금액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제한내에서 금융회사와 채무자 사이에 약정한율로,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되, 금융사정의 변화 그 밖의 상당한 사유로 인하여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내에서 율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환거래에 있어서는 국제관례 · 상관습 등에 따릅니다.

⑥ 금융회사와 채무자간의 약정에 따라 이자 등과 지연배상금의 계산방법 · 지급의 시기 및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 그것이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내이고 금융사정 및 그 밖의 여신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의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것일 때에는 변경후 최초로 이자를 납입하기로 한 날부터 그 변경된 사항이 적용됩니다.

⑦ 제4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그 변경기준일부터 1개월간 모든 영업점 및 금융회사가 정하는 전자매체등에 이를 게시하기로 합니다. 다만, 특정채무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개별통지하기로 합니다.

⑧ 제3항 및 제6항의 경우, 채무자는 변경 후 최초로 이자를 납입하기로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지일까지는 변경전의 이율 등을 적용하기로 하고, 제11조에 따른 기한전의 임의상환 수수료는 면제하기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그 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금융회사에 대한 반환채무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지연배상금률 등을 적용하기로 합니다.

⑨ 제5항의 지연배상금율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약정이자율' *에 '연체가산이자율'을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 약정이자율이 없는 경우 ('「상법」 제54조에 따른 상사법정이율 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가장 최근의 비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대출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상호금융 가계자금대출금리') 중 높은 금리를 적용

제4조 (비용의부담)

① 채무자는 채무불이행 또는 기한이익 상실사유 발생에 따라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비용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1. 채무자 ·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에 대한 금융회사의 채권 · 담보권 등의 권리의 행사 · 보전(해지 포함)에 관한 비용
2. 담보목적물 조사 · 추심 · 처분에 관한 비용
3. 채무이행 지체에 따른 독촉을 위한 통지비용

② 제1항에 의한 비용을 채무자가 지급하지 않아서 금융회사가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곧 이를 갚으며, 곧 갚지 아니하는 때에는 금융회사가 대신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대신 지급한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의 날짜수 만큼,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 범위(現 연6푼)내에서 약정금리로,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갚기로 합니다.

③ 금융회사는 여신약정시 채무자가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약정이자(시설대여의 경우 리스료를 말함), 기한도래일전 상환수수료 및 담보대출로 인하여 채무자가 부담하기로 한 부대비용의 항목과 금액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제4조의2 (대출계약 철회)

① 채무자(개인에 한함)는 계약서류를 발급받은 날(계약서류를 발급받은 날보다 대출금의 지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대출실행일)로부터 14일(이하 "철회기한"이라 합니다) 이내에 서면, 전화, 컴퓨터통신으로 대출계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1. 대출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
2. 대출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담보대출
3. 시설대여(리스),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및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4. 외부기관 위탁대출 및 기타 협약대출(다만 한국주택금융공사 유동화 대상 대출 등 금융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대출은 제외)

③ 제1항에 따른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 이자,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재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 및 다음 각 호의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따라 금융회사가 부담하거나 지급한 비용
2. 해당 대출과 관련하여 금융회사에서 지급한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
3. 해당 대출과 관련하여 금융회사에서 지급한 보증료 또는 보험료
4. 해당 대출과 관련하여 금융회사에서 제3자에게 지급한 채무자의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

④ 금융회사는 대출계약 철회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하여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등을 반환합니다.

⑤ 금융회사는 채무자에게 대출계약 철회에 따른 손해배상금 또는 위약금 등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⑥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자의 대출계약 철회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1년 이내에 2회 초과하여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2. 은행 등 전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1개월 이내에 1회 초과하여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제5조 (자금의 용도 및 사용)

채무자는 여신신청시 자금의 용도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금융회사와의 여신거래로 받은 자금을 그 거래 당초에 정해진 용도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급보증 기타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신용의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제6조 (담보)

① 채무자 또는 보증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신용이 악화되거나 담보물의 가액 감소가 현저한 경우, 채무자 또는 보증인은 채권보전을 위한 금융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그 원상회복 및 담보의 보충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연대보증인은 제7조에서 허용한 연대보증인에 한합니다.

② 담보목적물의 처분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임의경매 절차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 금융회사는 담보목적물로써 직접변제에 충당하거나, 담보목적물을 매각하여 그 대금에서 제 비용을 뺀 잔액을 제16조에 준하여 충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금융회사는 담보목적물의 평가액 또는 매각대금에서 그 채권액을 뺀 금액을 채무자 등에게 지급합니다. "채무자 등"은 채무자, 설정자, 담보목적물의 제3취득자를 말합니다.
1. 목적물의 가치가 적어 많은 비용을 들여 경매하는 것이 불합리할 경우
2. 경매시 정당한 가격으로 경락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3. 공정시세가 있어서 경매에 의하지 않아도 공정가격 산출이 가능한 경우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5. 채무자에게 제6조의 내용에 대해 별도로 설명하는 등 당해 금융회사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11을 준수하였고 채무자의 명시적인 사전동의를 받은 경우(제2항제5호에 따라 담보목적물의 처분이 이루어져 발생할 수 있는 채무자의 손실은 금융회사가 부담한다)

③ 임의경매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채무자 등과 금융회사가 알고 있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그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해관계인이 금융회사 또는 금융회사 · 금융회사와 거래관계에 있는 당해 매매업자가 산정한 예상매각대금 이상으로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지 않아야 처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담보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거나 가치가 급속하게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금융회사가 채무자의 요청 등만으로 담보목적물을 즉시 처분한 경우 금융회사가 그와 관련된 모든 분쟁과 책임을 부담합니다)
1. 담보권실행의 방법
2. 피담보채권의 금액
3. 담보목적물의 평가액 또는 예상매각대금
4. 담보목적물로써 직접 변제에 충당하거나 담보목적물을 매각하려는 이유
5. 금융회사와 거래관계에 있는 당해 매매업자의 정보

④ 채무자는 담보에 관하여 목적물의 멸실, 훼손, 처분 기타 그 담보가치를 감소시켜 금융회사의 채권보전에 지장을 초래할 현상변경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채무자는 담보에 관하여 그 밖의 현상변경 행위를 하거나 제3자를 위한 권리의 설정 혹은 제3자로의 양도 등의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금융회사에 통지하기로 합니다.

⑤ 채무자(기업에 한함)가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금융회사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의 동산 · 어음 기타의 유가증권을, 담보로서 제공된 것이 아닐지라도, 금융회사가 계속 점유하거나 제2항에 준하여 추심 또는 처분 등의 처리를 할 수 있기로 합니다.

제7조 (연대보증인)

① 금융회사는 채무자와 여신거래를 할 경우 연대보증인(명칭 또는 방식 여하를 불문하고 실질적으로 이와 유사한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을 포함합니다)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사업자에 대한 여신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공동대표
2. 법인에 대한 여신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자 중 1인에 한함. 단, 라목의 경우 2인이상 가능
   가. 최대주주
   나. 지분 30%이상 대주주, 과점주주 이사
   다. 본인과 배우자, 4촌이내 혈족 · 인척이 보유한 지분을 합산하여 30%이상인 주주
   라. 대표이사 또는 대표자(단, 고용임원 제외)
   마. 무한책임사원
3. 자동차구입과 관련된 여신(리스, 할부, 오토론 포함)으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장애인의 차량구입시 공동명의로 등록
   나. 영업목적(택시,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등)의 차량구입
4. 기타 여신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3자 명의 예 · 적금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그 제3자
   나. 건물신축자금 대출시 토지소유자, 건축주, 시행사 및 시공사의 대표자 등 건물신축과 관련된 자(다만, 건물후취담보 취득시 연대보증계약 해지)
   다. 분양계약자에 대한 이주비 · 중도금 · 입주자금 대출시 시행사 · 시공사의 대표자
   라. 법인격 없는 단체(조합 등)에 대한 여신취급시 그 구성원(조합원)
5. 법인이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는 경우

③ 제2항제2호 라목에 해당하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연대보증 한도액은 해당 연대보증인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④ 연대보증인은 채무자가 약정에 의하여 금융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하며, 그 이행에 관하여 이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⑤ 채무자가 금융회사의 동의없이 채무를 제3자로 하여금 인수 또는 승계하게 한 경우 채무자는 면책되지 않고 보증채무도 소멸하지 않습니다.

⑥ 연대보증인은 일부 대위변제 등으로 말미암아 금융회사로부터 취득한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동 거래의 미변제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의 보증이 남아 있는 동안에는 금융회사에 앞서서 이를 행사하지 않기로 하며, 금융회사와 동시에 그 권리를 행사할 경우에도 금융회사의 다음으로 변제받기로 합니다.

⑦ 연대보증인이 채무자의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따로 보증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 보증은 이 보증약정에 의하여 변경되지 아니하며, 따로 한 보증에 한도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위에 이 약정에 의한 한도가 더해지는 것으로 합니다.

⑧ 연대보증인은 채무의 일부변제 또는 채무자의 담보제공 등이 있는 경우 보증의 해지 · 해제, 보증액의 감액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채무 만기도래 또는 기한연장 시점에서 다른 연대보증인으로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동 요구에 따라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에 채무자 및 연대 보증인에게 심사결과를 통지합니다.

제8조 (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①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당연히 금융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즉시 상실하여(지급보증거래에 있어서의 사전구상채무 발생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유발생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는 사실을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1. 금융회사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도달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2.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재산(제1항 제1호의 금융회사에 대한 채권은 제외)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도달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3. 파산, 회생, 개인회생 절차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이 있는 때
4. 조세공과에 관하여 국세징수법 제14조 또는 지방세법 제26조에 의한 납기전 징수 처분을 받거나,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
5. 폐업, 도피 기타의 사유로 지급을 정지한 것으로 인정된 때
6. 채무자의 과점주주나 실질적인 기업주인 포괄근보증인의 금융회사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제1호의 명령이나 통지가 도달된 때
7. 채무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경우 와 외국인과의 결혼 및 연고 관계로 인하여 이주하는 때
8.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허위, 위 · 변조 또는 고의로 부실자료를 제출하여 금융회사의 채권보전의 중대한 손실을 유발한 때

②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채무자는 당연히 당해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기한의 이익상실일 3영업일(채무자가 가계인 경우 7영업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채무이행 지체사실과 이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다는 사실(채무자가 가계인 경우 대출잔액 전부에 대하여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채무자 · 연대보증인 · 담보제공자(단, 담보제공자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운송사업자인 경우에는 제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기한의 이익상실일 3영업일(채무자가 가계인 경우 7영업일)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 실제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3영업일(채무자가 가계인 경우 7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채무자는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이자 등(원금분할상환 또는 원리금분할상환 형식의 리스료 및 할부금 제외)을 지급하기로 한 때부터 계속하여 기업인 경우에는 14일간 지체한 때 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30일(가계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2개월)간 지체한 때
2.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 원리금의 지급을 2회(가계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3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
3. 할부거래에관한법률에 적용받는 할부금융거래의 경우에는 할부금을 연속하여 2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이 할부가격의 10분의1을 초과 하는 요건이 충족한 때

③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하여 금융회사의 채권보전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금융회사는 서면으로 변제, 압류 등의 해소, 신용의 회복 등을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부터 10일 이상으로 금융회사가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금융회사에 대한 수 개의 채무 중 하나라도 기한에 변제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때,
2.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 · 체납처분이 있는 때
3. 채무자의 제1항 제1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상의 담보권실행등을 위한 경매개시가 있거나 채무자의 신용이 현저하게 악화되어 채권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때
4. 제5조, 제22조에서 정한 약정을 위반하여 건전한 계속거래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된 때
5. 청산절차 개시, 결손회사와의 합병, 노사분규에 따른 조업중단, 휴업, 관련 기업의 도산, 회사경영에 영향을 미칠 법적분쟁 발생 등으로 현저하게 신용이 악화되었다고 인정된 때
6. 신용정보관리규약상 신용거래정보중 연체정보, 대위변제 · 대지급정보 · 부도정보 · 관련인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등 등록된 때

④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 금융회사는 서면으로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 부터 10일이상으로 금융회사가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대해 당해채무 전부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제6조 제1항, 제18조에서 정한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리스물건이나 담보물에 대한 보험 가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금융회사를 해할 목적으로 담보물건을 양도하여 금융회사에 손해를 끼친 때, 주택자금대출을 받아 매입 또는 건축한 당해주택, 또는 시설자금을 받아 설치 · 완공된 기계 · 건물 등의 담보제공을 지체하는 때, 기타 금융회사와의 개별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거래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된 때
3.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로써 상당한 기간 내에 보증인을 교체 하지 아니할 때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라도, 금융회사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분할상환금 · 분할상환원리금 · 이자 · 지연배상금의 수령 등 정상적인 거래의 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채무 또는 금융회사가 지정하는 채무의 기한의 이익은 그때부터 부활됩니다.

제9조 (기한이익의 상실의 연대보증인 및 담보제공자에 대한 통지)

① 제8조 제1항 각 호에 의하여 기한이익이 상실될 때, 금융회사는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기타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를 금융회사가 인지한 날로부터 각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 및 담보제공자(단, 담보제공자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운송사업자인 경우에는 제외)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기로 합니다.

② 제8조에 의하여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금융회사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 및 담보제공자(단, 담보제공자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운송사업자인 경우에는 제외)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기로 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연대보증인에게 기한이익 상실을 통지한 경우라도, 제8조제5항에 해당되어 기한이익이 부활된 채무에 대하여는 계속거래를 위한 연대보증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기한이익이 부활된 채무의 연대보증인에게 10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부활통지를 하기로 합니다.

제10조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및 민법 등에 따른 보증인에 대한 통지)

① 이 조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및 민법에 따른 보증인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② 금융회사는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그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채무자의 채무관련 신용정보를 보유하고 있거나 알고 있는 경우에는 보증인에게 그 정보를 서면으로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보증계약을 갱신할 때도 이와 같습니다.)

③ 금융회사는 채무자가 원본, 이자 그 밖의 채무를 1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할 수 없음을 미리 안 경우에는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서면, 전화, 휴대폰 문자메시지 중 한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

④ 금융회사는 보증인의 청구가 있으면 주채무의 내용 및 그 이행 여부를 서면, 전화, 휴대폰 문자메시지 중 한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보증인에게 지체없이 알려야 하며 채무자의 채무관련 신용정보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음을 금융회사가 알게 된 경우에도 보증인에게 서면, 전화 등으로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

⑤ 보증계약 체결 후 금융회사가 보증인의 승낙없이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기를 연장하여 준 경우에는 금융회사는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개별통지하기로 합니다. 제10조의2(할부거래법상 철회 · 항변권 안내) 금융회사는 할부금융거래 시 채무자가 할부철회 · 항변권이 적용되지 않는 거래를 할 경우에 채무자가 이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할부약정서 관련 서류(전자적 장치 등을 이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철회 · 항변권이 배제되는 경우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11에 따라 설명하고 안내하며 그에 관한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제11조 (기한전의 임의 상환)

채무자는 약정한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미리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갚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의 수수료 등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를 부담하기로 합니다. (단, 리스계약의 경우 부속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12조 (할인어음의 환매채무)

① 어음의 할인을 받은 채무자는 다음의 어음에 대하여 금융회사로부터의 독촉 · 통지 등이 없어도 당연히 어음면 기재금액에 의한 환매채무를 지고 곧 갚아야 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가 어음의 만기전에 환매채무를 이행하는 때에는 금융회사는 그 이행일부터 그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할인료 상당금액을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1. 채무자에 관하여 제8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할인 의뢰한 모든 어음
2. 어음을 발행 또는 인수한 자에게 제8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되거나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가 발행 또는 인수한 모든 어음

② 어음의 할인을 받은 채무자는 다음의 어음에 대하여 금융회사가 서면으로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0일이상으로 금융회사가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어음의 환매채무를 지고 곧 갚기로 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가 어음의 만기전에 환매채무를 이행하는 때에는 금융회사는 그 이행일부터 만기일까지의 할인료 상당금액을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1. 채무자에 관하여 제8조 제3항, 제4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할인의뢰한 모든 어음
2. 어음을 발행 또는 인수한 자에 관하여 제8조 제3항, 제4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그가 발행 또는 인수한 모든 어음

③ 제1항, 제2항에 의한 채무를 모두 갚을 때까지는, 금융회사가 어음소지인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 제2항의 경우에도, 제8조 제5항을 준용합니다.

제13조 (금융회사로부터의 상계 등)

① 기한의 도래 또는 제8조에 의한 기한전 채무변제의무, 제12조에 의한 할인어음의 환매채무의 발생 기타의 사유로,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와 채무자의 금융회사에 대한 채권과를 그 채권의 기한도래 여부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는 서면통지에 의하여 상계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있어서와 같이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는 사전의 통지나 소정의 절차를 생략하고, 채무자를 대리하여 채무자의 금융회사에 대한 채권을 그 기한도래 여부에 불구하고 환급받아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대리환급 변제충당 후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채무자에게 통지합니다.

③ 제1항에 따라 채무자의 채무와 채무자 및 보증인의 금융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경우, 금융회사는 상계에 앞서 채무자 및 보증인의 금융회사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일시적인 지급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기로 하되, 채무자와 보증인의 금융회사에 대한 채권 등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채무자와 보증인에게 통지하기로 합니다.

④ 제1항에 의한 상계나 제2항에 의한 대리환급변제충당을 실행하는 경우에는 채무자 · 보증인 · 담보제공자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 신속히 실행하기로 하며, 채권 · 채무의 이자 등과 지연배상금의 계산기간은, 금융회사의 상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날, 금융회사가 대리환급변제충당을 위한 계산을 하는 날까지로 하되, 그 율은 금융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외국환시세는 금융회사가 계산실행 할 때의 시세에 의하기로 합니다.

제14조 (채무자로부터의 상계)

① 채무자는 채무자의 기한 도래한 채권과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를 그 채무의 기한도래 여부에 불구하고 상계할 수 있습니다.

② 만기전의 할인어음에 관하여 제1항에 의하여 상계를 할 경우, 채무자는 어음금액에서 환매일부터 만기일까지 할인료 상당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환매채무를 지고, 이를 상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회사가 타인에게 재양도중인 할인어음에 관하여는 상계할 수 없습니다.

③ 제1항, 제2항의 약정에 불구하고, 외화에 대한 채권과 채무에 관하여는, 각기 기한 도래하고 또한 외국환에 관한 법령에 따른 소정절차를 밟은 때에 한하여 상계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상계를 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상계통지에 의하기로 합니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상계를 하는 경우 채권 · 채무의 이자, 할인료 등과 지연배상금의 계산기간은 상계통지가 도달한 날까지로 하고, 그 율은 금융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르며, 외국환시세는 금융회사가 계산 실행할 때의 시세에 의합니다. 또한 기한전 변제에 관한 특별한 수수료 등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 정함에 따라야 합니다.

제15조 (어음의 제시 · 교부)

① 어음이 따르는 거래에 있어서, 금융회사가 어음채권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13조에 의한 상계 또는 대리환급변제충당을 할 경우, 금융회사는 그 어음을 동시에 반환하지 아니하여도 되며, 어음의 반환장소는 그 거래영업점으로 합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어음을 찾아가도록 지체없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기로 합니다. 제14조에 의한 상계에 따른 어음의 처리도 같습니다.

② 금융회사가 어음채권에 의하여 제13조에 의한 상계 또는 대리환급변제충당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어음의 제시 또는 교부를 하지 않아도 되며, 이 경우의 어음의 처리도 제1항과 같습니다.

1. 금융회사가 채무자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2. 금융회사가 어음의 지급장소인 때
3. 교통 · 통신의 두절, 추심 기타의 사유로 제시 또는 교부의 생략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때

③ 제13조, 제14조에 의한 상계 등을 하고도, 곧 이행하기로 한 나머지 채무가 있을 경우에, 어음에 채무자 이외의 어음상 채무자가 있는 때에는 금융회사는 그 어음을 계속 점유하고 추심 또는 처분한 후, 제16조에 준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④ 금융회사가 어음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지급청구를 할 경우에도, 어음의 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금융회사의 변제 등 충당지정)

①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금융회사가 제13조에 의한 상계 또는 대리환급변제충당을 하는 경우에, 채무자의 채무 전액을 없애기에 부족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금융회사는 채무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충당순서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② 변제 또는 상계될 채무가 수 개인 경우로서 채무전액이 변제 또는 상계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 실행경매에 의한 회수금에 대하여는 민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③ 변제 또는 상계될 채무가 수 개인 경우로서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임의의 상환금 또는 각종 보증금 등으로 채무자의 채무전액을 없애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무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라 변제 또는 상계에 충당하기로 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를 경우 금융회사의 채권보전에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적담보나 보증의 유무, 그 경중이나 처분의 난이, 변제기의 장단, 할인어음의 결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회사는 지체없이 이의를 표시하고, 금융회사가 변제나 상계에 충당할 채무를 바꾸어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④ 금융회사가 변제충당순서를 제3항에 따라 민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바와 달리할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채무자와 담보제공자 및 보증인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기로 합니다.

제17조 (채무자의 상계충당지정)

① 채무자가 제14조에 의하여 상계하는 경우, 채무자의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무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라 상계에 충당합니다.

② 채무자가 제1항의 상계충당지정을 아니하거나 제1항의 지정에 의하면 금융회사의 채권보전상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6조에 준하여 금융회사가 상계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기로 합니다.

제18조 (위험부담 · 면책조항)

① 채무자가 발행 · 배서 · 인수나 보증한 어음 또는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제출한 제증서 등이 불가항력 · 사변 · 재해 · 수송도중의 사고 등 금융회사 자신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분실 · 손상 · 멸실 또는 연착한 경우 채무자는 금융회사의 장부 · 전표 등의 기록에 의하여 채무를 갚기로 하되, 채무자가 금융회사의 장부 · 전표 등의 기록과 다른 자료를 제시할 경우 금융회사의 기록과 채무자가 제시하는 자료를 상호 대조하여 채무를 확정한 후 갚기로 합니다.

② 채무자는 제1항의 분실 · 손상 · 멸실의 경우에 금융회사의 청구에 따라 곧 그에 대신할 어음이나 증서 등을 제출하기로 합니다. 다만, 금융회사가 제3자와의 거래에서 취득한 어음이나 증서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③ 제1항, 제2항에 의한 변제 또는 어음이나 증서의 제출로 인하여 채무자가 과실없이 이중의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됨으로 말미암은 손해는 금융회사가 부담하기로 합니다.

④ 금융회사가 어음이나 제 증서 등의 인영 · 서명을 채무자가 미리 신고한 인감 · 서명과 상당한 주의로써 대조하고, 틀림없다고 인정하여 거래한 때에는, 어음 · 증서등과 도장 · 서명에 관하여 위조 · 변조 · 도용 등의 사고가 있더라도 이로 말미암은 손해는 채무자가 부담하며, 채무자는 어음 또는 증서 등의 기재문언에 따라 책임을 지기로 합니다.

제19조 (신고사항과 그 변경 등)

① 채무자 및 보증인은 거래에 필요한 각각의 명칭 · 상호 · 대표자 · 주소 등과 인감 · 서명을 금융회사가 정한 서면에 의하여, 미리 신고하기로 합니다. 또한 대리인에 의하여 거래하고자 할 경우에, 그 성명 · 인감 · 서명 등에 관하여도 같습니다.

② 제1항에 의한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채무자 및 보증인은 각각의 정보를 지체없이 금융회사에 서면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음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변경사항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은 채무자 및 보증인이 지기로 합니다.

제20조 (자료의 성실작성의무)

채무자 및 보증인은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금융회사에 제출하는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 · 제출하기로 합니다.

제21조 (통지의 효력)

① 금융회사가 채무자 및 보증인이 신고한 최종 주소로 서면통지 또는 기타 서류 등을 발송한 경우,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② 채무자 및 보증인은 제19조 제2항에 의한 변경신고를 게을리 함으로 말미암아 제1항에 의하여 발송한 서면통지 또는 기타서류가 채무자 및 보증인에게 연착하거나 도달되지 않은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상계통지나 기한전 채무변제 청구 등 중요한 의사표시인 경우에는 배달증명부 내용증명우편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③ 금융회사가 채무자 및 보증인에 대한 통지 등의 사본을 보존하고 또 그 발신의 사실 및 연월일을 장부 등에 명백히 기재한 때에는 발송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제22조 (회보와 조사)

① 채무자는 그의 재산 · 부채현황 · 경영 · 업황 또는 융자조건의 이행 여부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금융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곧 회보하며, 금융회사가 필요에 따라 채무자의 장부 · 공장 · 사업장 기타의 조사를 하는 경우 협조하기로 합니다.

② 채무자는 그 재산 · 영업 · 업황 기타 거래관계에 영향을 미칠 사항에 관하여 중대한 변화가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을 때에는, 금융회사의 요구가 없더라도 이를 곧 통지하기로 합니다.

③ 금융회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한 회보 등이나 조사에 의하여, 채무자가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 부실여신의 보유, 경영상황의 급격한 악화 등으로 채권회수 불능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직원을 파견하여 채무자의 재산 및 경영에 관하여 채권보전을 위한 범위내에서 관리 · 감독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여신거래조건의 변경)

① 금융회사는 국가경제 및 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으로 계약당시에 예상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긴 때에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단문메세지서비스(SMS) 중 2가지이상의 방법으로 채무자에게 이를 알리고 여신한도, 여신만기, 금리 등 여신거래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채무자는 제1항에 의하여 여신한도 · 여신만기의 거래조건이 변경된 경우 이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변경기준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금리의 경우는 변경후 최초로 이자를 납입하기로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11조에 따른 기한전의 임의상환 수수료는 면제하고, 해지일까지는 변경전의 여신거래조건을 적용하기로 합니다.

③ 채무자는 신용상태가 호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융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신한도, 여신만기 등 여신거래조건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채무자 앞으로 곧 통지하기로 합니다.

제23조의2 (금리인하요구권)

① 채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화, 서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또는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채무자가 개인이 아닌 경우(개인사업자 포함) : 재무상태 개선 또는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금융회사는 채무자가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경우 자체 심사를 거쳐 10영업일 이내(금리인하요구자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그 보완을 요구한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에 채무자에게 금리인하 심사결과 등을 전화, 서면, 휴대폰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등 한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③ 금융회사는 금리인하요구자의 신용상태 개선이 금리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수용 여부를 판단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 금리인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계약체결시 채무자의 신용상태가 금리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
2.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 재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④ 채무자는 금융회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채무자의 신용상태 변동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⑤ 금융회사는 제1항의 금리인하 요구권과 관련하여 금리인하요구 요건, 신청 및 통지절차 등을 마련하여 홈페이지, 상품설명서등을 이용하여 알립니다.

제24조 (이행장소 · 준거법)

① 채무의 이행장소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거래영업점으로 합니다. 다만, 부실채권의 관리 등 상당한 사유로 채권관리업무를 금융회사가 본점 · 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이관한 경우에는, 이관 받은 본점 · 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을 그 이행장소로 합니다.

② 채무자가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아닌 경우라도, 이 약관에 터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적용될 법률은 국내법을 적용합니다.

제25조 (약관 · 부속약관 변경)

① 금융회사가 이 약관이나 부속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채무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될 때에는 서면통지로써, 그 밖에는 거래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로써, 이를 알려야 합니다

② 금융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할 경우 "채무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채무자가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제26조 (관할법원의 합의)

① 이 약관에 터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금융회사와 채무자 또는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채무자의 주소지 또는 금융회사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금융회사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 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 받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② 할부거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채무자 또는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의 주소지를,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 또는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